제20대 국회개원

NABO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⑤ 상속세 및 증여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❺ 상속세 및 증여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5 상속세 및 증여세

총괄 |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정문종 조세분석심의관
김경신 세제분석과장

집필 | 최천규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이하영 행정실무원
이수연 자료분석지원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788-3778 rtsa@assembly.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개원

NABO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❺ 상속세 및 증여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5.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조세는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복지·경제 정책수요의 증가는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 확장을 가속하여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개혁 및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세개편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조세개편 방향과 쟁점을 파악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와 현안 위주로 정리된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한 이후, 동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마다 이루어지는 제도변화와 최근의 현안 등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개정판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면서, 부의 집중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속·증여세편'을 신규 발간하였습니다.

지금은 복지·경제 정책 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세제관련 입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조세체계 이해를 돕고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에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Contents

Ⅰ. 개요

1. 상증세제의 의의 ····· 3
   가. 자산의 무상이전 ····· 3
   나. 무상이전(상속 및 증여) 자산의 과세 ····· 5

2. 상속 및 증여의 개념 및 범위 ····· 6
   가. 민법상의 상속 및 증여 ····· 6
   나. 조세법상의 상속 및 증여(포괄주의 증여) ····· 10

3. 상증세제의 과세근거 ····· 17
   가. 법이론적 근거 ····· 17
   나. 경제이론적 근거 ····· 18
   다. 사회정책론적 근거 ····· 18
   라.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 ····· 19

4. 상증세제의 과세유형 ····· 20
   가. 유산세방식 ····· 20
   나. 유산취득세방식 ····· 22
   다. 법정상속분 과세방식 ····· 23
   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선택기준 ····· 24

5. 우리나라 상증세제의 변천 ····· 26
   가. 상속세 ····· 26
   나. 증여세 ····· 29

Contents

Ⅱ. 상속세의 과세체계

1. 개요 ····· 35

2. 납세의무 ····· 36

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36

나. 납세의무자 ····· 37

3. 과세대상 상속재산 및 과세가액 산정 ····· 41

가. 상속재산의 범위 ····· 41

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 43

4. 상속공제 ····· 46

가. 개요 ····· 46

나. 인적공제 등 ····· 47

다. 물적공제 ····· 49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5

가. 과세표준 ····· 55

나. 결정세액의 계산 ····· 56

6. 신고 및 납부 ····· 60

가. 신고기한 등 ····· 60

나. 납부 등 ····· 62

Ⅲ. 증여세의 과세체계

1. 개요 ····· 67

2. 납세의무 ····· 68

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68

나. 납세의무자 ····· 69

3. 과세대상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산정 ····· 72
가. 과세대상 증여재산 ····· 72
나. 과세가액 산정 ····· 74

4. 증여공제 ····· 79
가. 증여재산공제 ····· 79
나. 재해손실공제 ····· 80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80
가. 과세표준 ····· 80
나. 결정세액의 계산 ····· 82

6. 신고 및 납부 ····· 84

Ⅳ. 국내·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국내외 상증세 부담현황 ····· 89
가. OECD 국가의 상증세 부담현황 ····· 89
나. 우리나라의 상증세제 부담현황 ····· 92

2.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제 개편동향 ····· 98
가. 미국 ····· 99
나. 영국 ····· 100
다. 독일 ····· 101
라. 일본 ····· 102

3. 우리나라의 상증세제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106
가. 상증세제의 유형전환 ····· 106
나. 과세방식의 전환 ····· 111
다. 가업승계세제의 완화 여부 ····· 114

표 목차

[표 1] 민법상 증여와 상증세법상 증여의 비교 ····· 17
[표 2]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선택기준별 비교 ····· 25
[표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제척기간 ····· 37
[표 4]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 43
[표 5] 상속세의 비과세 항목 ····· 44
[표 6]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과 비과세의 비교 ····· 44
[표 7] 공과금 등의 공제금 내용 ····· 45
[표 8]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 46
[표 9] 상속공제의 내용 ····· 47
[표 10] 그 밖의 인적공제 ····· 48
[표 11] 일괄공제의 적용 ····· 49
[표 12] 가업상속공제 요건 ····· 50
[표 13]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50
[표 14] 가업상속공제금액 ····· 51
[표 15] 가업상속공제의 추징사유 및 추징대상금액 ····· 51
[표 16] 영농상속공제의 요건(다음 표 합쳐서 만들기) ····· 52
[표 17]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53
[표 18]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54
[표 19]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 55
[표 20] 상속세율 ····· 57
[표 21] 연도별 세율 개정연혁 ····· 57
[표 22] 재상속분의 공제율 ····· 60
[표 23] 상속세 신고기한 ····· 62
[표 24] 상속세의 납부방법 ····· 62
[표 25] 수증자의 권리주체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 69
[표 26] 수증자의 증여세면제규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면제규정의 비교 ····· 71
[표 27]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한도의 비교 ····· 72
[표 28] 증여세 과세대상 ····· 73
[표 2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74

[표 30] 증여세 과세가액계산 구조 ····· 75
[표 31] 증여재산공제의 변천 ····· 80
[표 32]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81
[표 33] 개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81
[표 34] 증여세의 세율 ····· 82
[표 35] 증여세 신고기한 ····· 85
[표 36] OECD국가의 GDP대비 상증세 부담비중 ····· 89
[표 37] OECD국가의 총조세 대비 상증세 부담비중 ····· 91
[표 38] 상속세 과세자 비율 ····· 93
[표 39]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 ····· 94
[표 40] 최근 5년도 증여세 신고현황 ····· 96
[표 41]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 96
[표 42] 증여세 평균유효세율 ····· 97
[표 43] 상증세의 세율 개정 내용 ····· 103
[표 44] 최근 OECD 주요국의 상속세제 동향 ····· 104
[표 45] 2007년 이후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개정 현황 ····· 115
[표 46]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 116
[참조]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가업승계세제 비교 ····· 119

그림 목차

[그림 1] 상증세법상의 증여의 범위 ····· 12
[그림 2] 유산세방식의 개념도 ····· 21
[그림 3] 유산취득세방식의 개념도 ····· 22
[그림 4] 법정상속분방식의 구조(예시 : 배우자 + 자녀2인의 경우) ····· 24
[그림 5] 상속세 과세체계 ····· 35
[그림 6] 상속세 결정세액 계산구조 ····· 56
[그림 7] 증여세 과세체계 ····· 67
[그림 8] 증여세 결정세액 계산구조 ····· 82
[그림 9] 상증세 세수추이 ····· 93
[그림 10]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 추이 ····· 95
[그림 11] 증여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 98

Ⅰ. 개요

1. 상증세제의 의의 ····· 3
2. 상속 및 증여의 개념 및 범위 ····· 6
3. 상증세제의 과세근거 ····· 17
4. 상증세제의 과세유형 ····· 20
5. 우리나라 상증세제의 변천 ····· 26

Ⅰ. 개 요

1. 상증세제의 의의

가. 자산의 무상이전

-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아무런 대가관계를 수반하지 않고 경제주체 간에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음**
- **경제주체간 대가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대표적 무상거래의 형태는 상속과 증여**
  - 상속 :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
  - 증여 : 증여자가 생전에 경제적 가치를 무상이전
- **세대간 자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원인(동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유산동기이론)이 존재함[1]**
  - 우발적 유산(Accidental Bequest)[2] :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자손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이론
  - 이타적 유산동기(Altruistic Bequest Motive)[3] :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생각하여 유산을 남긴다는 이론
  - 유산의 기쁨(Joy of Giving)[4] :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이론
  - 전략적 유산동기(Strategic Bequest Motive, exchange motive)[5] : 부모가 유산

1) 이와 관련하여 国枝繁樹, "相続税・贈与税の理論",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2002. 10.,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pp. 108~126. 및 김진,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12. pp. 43~48.을 참조하였음

2) Abel, A., "Precautionary Saving and Accidental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5*, 777−91, 1985.

3) Kaplow, L.,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and Gift Taxation," in W. Gale, J. Hines and J. Slemrod eds., *Rethinking Estate and Gift Taxation*, 164−215, Brookings, 2001.

4) Andreoni, J., "Giving with Impure Altruism : Applications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97*, 1447−58, 1989.

5) Bernheim, D., A, Schleifer, and L.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99*,899 −927,1985.

을 남기는 것은 자녀에게 부모를 보살피라는 전략적 동기, 즉 부모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이론

■ **자산이전 행위는 개인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봄**[6)]

- 유산에 따른 효용 동기에서 자산이전의 동기는 자산이전에 따른 이전자(移轉者)의 효용증가에 있으며, 이전자의 효용증가는 자산이전 금액에 따라 다름
- 우발적 동기에서의 자산이전 동기는 이전자가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이전자가 예방 또는 다른 동기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우발적으로 이전하여 발생하며, 이전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전자의 효용은 문제가 되지 않음
- 이타적 동기에서의 자산이전 동기는 이전자가 수혜자(수령자)의 효용증가를 이타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전자의 효용증가는 자산이전액이 수령자의 효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름
- 전략적 동기에서의 자산이전 동기는 수령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의 대가로 파악되며, 이전자의 효용증가는 수령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따라 다름

■ **생전증여는 부모와 자녀간의 자산이전이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다름**[7)]

- 우발적 유산동기 이론 하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노후만을 위해 저축을 행하기 때문에 생전증여를 행하려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음
- 이타적 유산동기 이론 하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생애소득의 불확실성 및 유동성 제약의 정도에 따라 생전증여의 선택 및 시점이 이루어짐
- 유산의 기쁨 이론 하에서는 생전증여액과 상속액(유산액)이 얼마큼 부모의 효용을 증가시키는지에 따라 증여와 상속의 선택이 결정됨
- 전략적 유산동기 이론 하에서 부모는 유산을 대가로 자녀의 서비스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생전증여를 가급적 늦추려고 함

6) The Mirrlees Review의 최적과세론의 설명에 따른 것임(Institute for Fiscal Studies, Dimensions of Tax Design : The Mirrlees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재인용 関口智, “相続税・贈与税の理論的基礎 : シャウプ勧告・ミード報告・マーリーズレビュー”,「税研」151号, 2010. 5. p. 24.)

7) 国枝繁樹, “相続税・贈与税の理論”,「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2002. 10.,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pp. 115~116.

나. 무상이전(상속 및 증여) 자산의 과세

■ **자산[8]의 이전은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이전과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무상이전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유상이전 시에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무상이전 시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과세됨**

- 자산의 무상이전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고,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로 과세
  -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의 형태로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의 크기를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증여의 형태로 수증자에게 그 이전된 자산의 크기를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됨
- 다만,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과세
  - 자산을 무상이전 받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게 그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상속세제는 고대 수메르(Sumer)왕국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19세기말 세계 각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제'라고 함)가 근대적 조세체계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 각국의 사회·경제상황에 따라 변천되어 오고 있음**

- 영국 : 1894년 현재의 유산세 형태 도입
  - 1694년 동산에 대한 상속세가 최초로 도입 된 이후 사망한 자의 유산전체의 자산에 대하여 과세된 것은 1984년임
- 독일 : 프로이센에서 1873년 근대적 상속세 형태 도입
  - 상속에 대한 과세는 프랑크왕국시대부터 존재
- 프랑스 : 1901년 현대적 상속세 형태 도입(상속세의 누진세율 및 채무공제 인정)
  - 루이 16세 시대인 1790년 최초로 상속세의 법적체계의 정비로 사망을 원인으로 한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의 이전에 대하여 직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8) 소득은 일정기간 개인 또는 법인의 얻은 수익(소득)을 측정하여 과세되지만, 자산은 일정 시점 이들이 소유한 자본 내지 재화의 저량(貯量)으로 과세되며, 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관계에 따라 자산과세를 부과하고 있음. 즉 자산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보유, 자산의 거래 및 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로 나뉨
1. 자산보유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2. 자산거래 : 취득세 및 등록세
3. 자산이전 :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되었으며, 세율은 비례세 형태였음

- 미국 : 현재의 연방 유산세는 1916년 현재의 연방 유산세 형태 창설
  - 1862년 남북전쟁 전비조달 목적으로 최초로 창설되었지만, 1870년 폐지된 후 몇 번의 창설과 폐지를 거친 후 1916년 현재의 유산세 형태 창설
- 일본 : 1905년 러일전쟁 전비조달 목적으로 창설

■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 공포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상증세제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사회 · 경제 상황에 따라 변천(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일제시대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의 제정 · 공포로 상속세제가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도 계속하여 시행해 왔음
- 1952년 11월 증여세법을 폐지하고 상속세법에 통합되었으며,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상증세제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세제로 다음과 같은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음**

- 상증세제를 통해 부의 세습을 줄여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및 강화시킴
- 상증세제는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의 집중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짐

2. 상속 및 증여의 개념 및 범위

가. 민법상의 상속 및 증여

(1) 상속

■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제도는 사유재산 제도 자체의 반영임[9)]**

9) 구욱서, 「사법과 세법」, 유로, 2010. p. 664.

■ **상속의 본질은 개인적 소유의 재산승계로 보고 있으며[10], 따라서 승계된 재산이 상속대상이 됨**

- 본래 상속의 대상은 신분상속과 재산상속으로 나뉘며, 신분상속은 호주 등의 신분이 상속되는 경우이고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재산상속이 됨
-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1월 1일 이후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호주승계도 없어져 민법상 상속의 개념은 재산상속만이 남게 되었음[11]

■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민법 제997조[12]),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상속인은 자연인만이 인정되고 있음(민법 §1000)**

- 현행 민법상 상속인[13]에는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한정상속인, 선순위상속인[14]의 상속포기에 따른 후순위상속인을 들 수 있음

---

10) 中川善之助・泉久雄, 「相続法(第4 版)」, 有斐閣, 2000, pp. 1~3. 재인용 水野忠恒, "相続税の意義と根拠", 「相続税・贈与税の諸問題」, 日税研論集 第61号,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2011. pp. 4~7.

11) 이광재,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5. p. 34.

12) 이하 '민법 제1조제1항제1호'는 '민법 §1① i '으로 나타냄

13) 상속능력(상속자격)의 혼란을 맡기 위해 민법상 다음과 같이 상속인 자격이 있는자와 없는자를 구분하고 있음

민법상 상속인 자격이 있는 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
① 태아	①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와 계모자 관계
② 이성동복(異性同腹)의 형제	②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③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③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④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④ 유효하지 않은 양자
⑤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⑤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⑥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⑥ 이혼한 배우자
⑦ 북한에 있는 상속인	
⑧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주: 1. 이성동복(異性同腹)이란 부(父)가 다르고 모(母)가 같은 경우를 말함
2. 혼외자(婚外子)란 혼인 외의 관계에서 얻은 자녀를 말함
3.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란 혼인 외의 출생자(서자)와 부(父)의 배우자(적모, 본처) 사이의 관계를 말함. 민법은 개정을 통해 적모서자간의 친족관계와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를 부인하고 있음

자료: 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14)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승계로서 상속인의 지정・선정을 허용하는 것은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 사이의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후일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염려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므로 상속의 순위를 법률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속인의 순위는 제1순위 : 직계비속, 제2순위 : 직계존속, 제3순위 : 형제자매, 제4

- 법정상속인 : 민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 부여(민법 §1000 및 §1003)
- 대습상속인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함(민법 §1001)
- 한정상속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함(민법 §1028)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민법 §1005),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민법 §1006)**

-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積極財産)과 채무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은 물론 조건부 권리나 아직 권리 또는 의무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상의 법적지위(예를 들면 청약자의 지위 등)도 포함됨
-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유언)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15]과 민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16]으로 구분됨

■ **상속과 유사한 형태로 자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있으**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이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15) 지정상속 즉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법정상속인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이 될 수도 있음. 다만 유류분(피상속인의 자의적 재산처분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여기서 유류분이라 함은 상속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임.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음(민법 §1112))

1.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6)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즉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하고((민법 §1009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 각자 상속분의 50%을 더함

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17])에서는 이를 모두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민법은 각각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법률적 효과를 부여함

- 유증 : 유언에 의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이며, 사인행위(死因行爲)란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증여와 다르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김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18]이 이루어진 무상증여로서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며, 민법상 증여로 보고 있음(민법 §562)

(2) 증여

- **민법상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의사표시(청약)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554)**
  - 증여는 통상 증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나 민법상은 이러한 증여의 실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을 증여라고 함
  - 증여는 요식행위로 보지 않아 서면계약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유효하게 증여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음
-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지체 또는 기타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증여의 효력으로서 증여자의 담보책임과 증여의 해제에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여자는 그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임(민법 §559)
- **민법상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해제원인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됨**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의제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증여자 또는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음(민

17)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제1호'는 '상증세법 §1① i '으로 나타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는 '상증세령 §1① i '로 나타냄.

18)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임

법 §555)

- 망은행위(忘恩行爲) :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민법 §556)
- 재산상태의 변동에 의한 증여의 해제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민법 §557)

■ **민법상에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정기증여(定期贈與), 사인증여(死因贈與), 혼합증여(混合贈與) 및 기부(寄附) 등의 특수한 형태의 증여가 있음**

- 부담부증여 : 통상의 증여계약을 함과 동시에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가하는 증여계약으로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함(민법 §561)
- 정기증여 : 증여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매년 말 등 정기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를 말함
- 사인증여 : 증여자 생전에 증여계약은 맺으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함
- 혼합증여 : 혼합증여는 일부분만 대가관계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출연의 합의가 있는 계약을 말함. 즉 매매·교환과 같은 유상계약과 증여라는 두 개의 계약이 한 개의 계약으로 되는 경우
- 기부 : 일반적으로 공익 또는 공공을 위한 무상의 출연

나. 조세법상의 상속 및 증여(포괄주의 증여)

■ **현행 상증세법상에는 과세원인이 되는 상속·증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상증세법 §2)**

- 상속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법상의 개념을 차용[19]하고 있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19) 종전의 상증세법상에서는 "상속"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15년말 개정을 통해 "상속"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음. 현행 상증세법 제2조제1호상의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1. 유증(遺贈)
2. 민법 §562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

-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증여개념과 다른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이하에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1) 포괄주의 증여개념의 도입

■ **조세법상 포괄주의란 과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예외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한 것을 의미**

- 포괄주의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열거주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1950년 증여세제를 도입하면서 포괄주의 증여과세를 도입하여 1979년까지 시행한 이후 1980년 열거주의로 전환하고, 1998년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2003년까지 그 체계를 유지**

- 1950년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서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간접적인 증여방법을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1979년 대법원 판결[20] 이후 간접증여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과세하기로 법률에 정하면서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 방식으로 전환 됨
- 1998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2003년까지 시행됨

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사인증여"(死因贈與))를 포함

3.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0) 1979년 대법원은 증여개념을 엄격히 해석하여 「민법」상 증여가 아닌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79.04.24. 선고 78누423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간 간접증여시에도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실무에 제동이 걸리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음(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p. 488.)

■ 2004년 상증세법 개정에 의해 포괄주의 증여개념의 도입

- 구 상증세법상에는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차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증여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민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왔음
  -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둠
- 이러한 민법상의 증여개념과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재벌 및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를 막지 못하였으며, 이에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의 하나로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도입[21]
  - 2003년말 상증세법 개정시 제2조제3항과 제4항 신설로 상증세법상의 증여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증여세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
  - 종전 개별적인 증여의제 규정은 모두 증여 예시규정으로 전환

[그림 1] 상증세법상의 증여의 범위

<table>
<tr><td colspan="5">증 여 세</td></tr>
<tr><td>민법상 증여</td><td colspan="3">증여의제(14개), 증여추정(2개)</td><td>새로운 유형</td></tr>
<tr><td rowspan="2">계약에 의한
무상이전</td><td>일반거래를
통한
무상이전</td><td>자본거래를
통한
무상이전</td><td>증여의제
유형과
유사사례</td><td rowspan="2">형식에
관계없이
직간접
무상이전</td></tr>
<tr><td colspan="3">열거주의(~'98)</td></tr>
<tr><td rowspan="2">포괄주의</td><td colspan="3">유형별 포괄주의('99~'03)</td></tr>
<tr><td colspan="4">완전 포괄주의('04~)</td></tr>
</table>

■ 그러나 상증세법상 증여의 완전포괄주의 규정형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양론이 대립함

21) 구욱서, 「사법과 세법」, 유로, 2010. p. 366.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에 찬성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상증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민법상의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든 재산·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2.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주], 나아가 세법은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보다 훨씬 강한 정도의 포괄성을 필요로 한다.
3. 미국·일본·독일 등도 이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고, 우리 법인세법이나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법에서도 포괄적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4. 포괄주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만연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의 세법영역에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평등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감안하면 완전포괄주의 개념의 도입은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상증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상증세법은 일반적 증여의제 규정(제32조)과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열거규정 및 이와 유사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제42조) 등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중간형태인 유형별 포괄주의를 이미 도입하고 있어 이미 과세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이용한 과세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2.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 과세표준 등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세법에 명확한 과세요건의 규정 없이 포괄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3. 과세요건의 명확한 법률규정 없이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로 인한 과세권 남용 및 이로 인한 조세평등주의에의 위배 가능성이 있다.
4. 캐나다·호주 등은 이미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여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으며, 미국은 점진적으로 상속과세의 면세점 인상 및 세율인하로 부담을 완화하다가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증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국제적인 상증세 완화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주: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상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관련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5.2.23. 결정 헌재 93헌바24)

자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4년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4. 재인용 이광재,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5.

(2) 포괄주의 증여규정의 보완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도 변칙적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으며, 상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은 추상적·일반적 규정으로 어떠한 경제거래 행위가 증여세로 과세될 것인지, 과세대상이 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음

■ **이에 2012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완전포괄주의의 위헌논란에 대한 입법적 보완으로 증여범위(완전포괄주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함과 동시에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22)]**

- 증여재산의 범위

종전	2012년 개정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신설
  - 재산의 무상이전 : 재산가액
  - 재산의 유상이전 : 시가와 대가의 차이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의 평가차액

■ **2015년말 「상증세법」 개정시 동법 제4조 등을 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한 과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

- 증여세 과세대상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한 경우 발생한 이익(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

22) 2012년 상증세법 개정 당시 증여재산의 범위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은 각각 상증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되었으나, 2015년 동법 개정시 증여재산의 범위는 동법 제2조 정의규정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의 경우에는 동법 제31조로 이관됨. 여기서 동법 제2조 정의규정은 신설된 조항 즉 종전 동법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신설하였음

닌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만 과세)
- 재산 취득 후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만 과세)
- 증여예시 및 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
- 증여예시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

•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포괄주의 증여개념의 내용

■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는 민법상의 증여개념까지 포괄(완전포괄주의)하는 창설적인 고유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상증세법 §2vi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여"를 정의하고 있음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 **상증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음**

• 증여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을 불문
- 민법상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는 물론이고 단독행위이든 합동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 그 이전의 원인에 관한 사법상의 형식 불문[23]

■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일체 증여로 봄**

•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은 단순한 거래 또는 복잡한 여러 단계의 경로를 통하여 이익을 보았는지 불문하고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임

• 「증여의 기본개념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만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23) 구욱서, 「사법과 세법」, 유로, 2010. pp. 367 ~ 369. 이하 부분도 참조.

자기증여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 「무상이전」은 민법상 증여인 무상이전뿐만 아니라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30%)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포함
-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의 경우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이란 토지·건물·주식 등의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업권·저작권 등의 무형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되며, 이는 민법상 매매의 대상인 재산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됨

■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

-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은 사전 행위에 따른 사후적 가치증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본이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여세제의 틀 속에 자본이득세의 요소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비상장회사의 상장이익(상증세법 §41의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동법 §40),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사후적 가치증가(동법 §42④),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과세(동법 §45의4)

■ **재산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산정해야 함**

- 증여세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증여로 인한 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과세논리상 당연하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증여이익은 과세상 의미 없음

(3) 민법상 증여와 상증세법상 증여와의 비교

■ **민법상 증여와 상증세법상의 증여는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음**

- 민법상 증여는 증여계약에 관하여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법적효과를 분명히 하여 국민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주요 입법목적임[24]
- 상증세법상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 행위의 경제적 실질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를 통한 공평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 입법목적임

24) 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p. 479. 이하부분도 참조

[표 1] 민법상 증여와 상증세법상 증여의 비교

구분	민법상의 증여	상증세법상의 증여
개념	증여자와 수증자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계약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 또는 기여로 타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재산평가의 필요성	불필요	필요
중심적 가치	증여계약에 따른 법률적 효과	경제적 실질의 무상이전
증여의제	증여가 아님	증여에 해당
증여추정	증여가 아님	증여에 해당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	증여가 아님	증여에 해당

자료: 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3. 상증세제의 과세근거

■ **상증세제에 대한 근거이론은 법이론적 측면, 경제이론적 측면, 사회정책론적 측면 및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증여세 등으로 대별되어 있음**[25]

가. 법이론적 근거

■ **국가귀속설**

- 유산은 본래 주인이 없는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국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론

■ **국가공동상속권설**

- 국가상속권설은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음
  - 가장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만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을 인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산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에 참여
  - 사망한 자와 상속하는 자 간의 친족관계가 멀면 멀수록 국가의 재산상속지분을 증가시킴
  - 사망한 자는 국가에게도 최소한도의 유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유언

25) 이 부분은 최명근, 「상속과세론」, 세경사, 1990, pp. 35 ~46. 및 최명근, 「상속과세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pp. 115 ~ 121 참조.

의 자유를 그 한도 내에서 제한

■ **국가과세권력설**

- 상속과세는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규율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
  - 사망한 자가 행한 유언이 그의 사후에도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제도는 순수한 법의 창조물(a pure creation of the law)이며, 국가는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조건과 제한을 과할 권리를 가진다고 봄

■ **국가용역대가설**

- 정부에 의해 과징되는 조세는 국가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며, 상속세는 특히 재산의 이전행위에 대한 보호의 대가라고 보는 이론
  - 정부가 그 본질에 있어서 시민의 보호적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적 조직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견해

나. 경제이론적 근거

■ **회피조세정산설**

- 피상속인이 생존시 재산 축적과정에서 탈세 또는 회피된 조세를 정산하기 위해 사망시점에 상속과세를 해야 한다는 이론
  - 생존시에 포탈 또는 회피한 조세의 후불이라는 의미에서 사후과세설이라고도 함

■ **응능부담력설**

- 상속세를 인세(人稅, a personal tax)로 보면서 피상속인·상속인·가족의 집단을 기준으로 그들의 사정·환경·상속되는 부의 크기를 고려, 상속세의 담세능력을 측정하여 과세한다는 이론

다. 사회정책론적 근거

■ **기회균등을 위한 과세**

-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이나 증여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어 불평등한 출발이 되

므로 이에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

- 출생할 때부터 부유한 사람은 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유익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출발부터 불평등하므로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상속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

■ **인적자본(human capital) 비과세에 대한 보완 과세**

- 생의 출발점을 불평등하게 하는 주요원인이 인적자본[26]의 승계이며, 인적자본이 사회적 부의 거대한 구성요소이면서도 이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물적 부의 세대간 이전에는 과세(상속세)해야 한다는 이론

■ **권력 및 부의 집중억제**

- 상속 및 증여세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와 권력의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론
  - 상속 등에 의해 부를 보유하게 된 개인들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영향력(정치조직에 형평에 맞지 않는 영향력 포함)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음

라.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

■ **상속세의 존립전제로서의 증여세**

26) 상속에 따른 경제적 지위가 불평등해지는 원인은 인적(人的) 부(富)의 상속과 물적(物的) 부의 상속으로 볼 수 있으며, 인적 부의 상속은 다음의 것을 말함

1. 부모의 연줄(parental pull)
   부모의 연줄은 성공이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눈에 띄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함.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각 개인의 결승점을 향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때 현실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2. 외면적 특질
   사람의 말하는 모습·옷 입는 스타일·예절 등을 의미하는 외면적 특질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세대간에 이전되며, 이는 자녀의 직업선택 등 진로결정과 성공가능성에 큰 영향을 줌. 이러한 유형의 배경적 영향은 비록 자녀의 성공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유리한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유리한 경제적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
3. 환경적 결정요인
   부모가 받은 높은 수준의 교육은 자녀들의 성공기회에 대하여 유리하게 작용
4. 상위계층간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도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
   (최명근, 「상속과세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pp. 118 ~ 119)

- 상속세제도만 존치할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개연성이 있음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파악하여 부과하므로, 증여세는 없고 상속세만 존재한다면 사망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의 세습이 가능

■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

- 상속세의 본질을 세습과 집중을 완화로 이해하는 경우 상속세는 증여세제도를 수반
  -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로 인해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의 편중 완화

4. 상증세제의 과세유형

■ **상증세제의 과세유형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대별됨**

- 유산세방식(Estate Type)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유산총액(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유산취득세방식(취득세방식, Inheritance Type)은 상속인(수증자)의 유산(증여가액)취득가액에 대하여 각각 과세함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가. 유산세방식

■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27]**

-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

■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 유산에 대한 누적된 조세관계 정산**

- 피상속인이 축적한 재산은 본인의 능력 외에 각종 조세혜택이나 조세탈루의

27) 김완일,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5-3호, 세경사, 2009. 12. pp. 246 ~ 250. 이하도 참조.

결과인 것으로 보고 이를 사망시에 정산한다는 의미

■ **상속인의 인원수나 상속분 또는 유산분할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단독상속이나 공동상속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속세 부과**

- 유산을 상속인 각자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유산분할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그림 2] **유산세방식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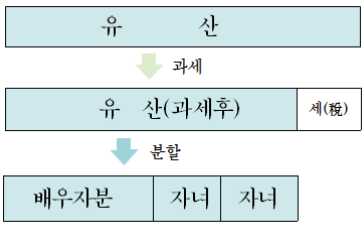

■ **유산세방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28)]

- 상속유산의 사회환원
  -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부를 축적한 것은 사회가 그의 뛰어난 경제적 재능을 인정하고 재산의 관리·운용을 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같은 경제적 재능을 가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개시에 의해 재산이 이전할 때에 상속유산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해야 함
- 조세의 정산
  - 사람의 사망은 그가 생존 중에 받은 세제상 혜택 및 조세회피에 의해 축적한 재산을 파악·과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때에 소득세 또는 재산세의 후불로서 과세하려고 한다면 유산액을 과세베이스로 하는 것이 타당

28) 최명근, 「상속과세론」, 세경사, 1990, p. 74.

나. 유산취득세방식

■ **유산취득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속인 · 수유자 · 수증자 등의 취득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

- 상속세를 자산이득세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상속이라는 형태로 재산이 이전되어 상속인의 자산증가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라 봄

■ **유산취득세형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별로 취득하는 유산의 유무와 크기에 따라 상속세의 크기가 달라짐**

- 상속인 · 수유자 · 수증자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 · 계산하고, 분할 · 계산된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피상속인의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기 때문에 유산세형보다 부담세액이 적어지게 됨

[그림 3] **유산취득세방식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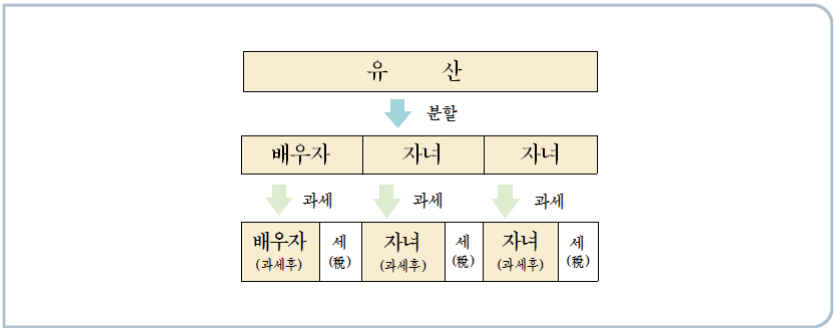

■ **유산취득세방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29]

- 부의 분산 유도기능
  -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분산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 총액은 적어지기 때문에 유산세방식보다 부의 분산 유도기능이 우수함
- 응능부담원칙에 부합

29) 최명근, 「상속과세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p. 383.

- 상속세 부담이 무상취득자에게 귀착된다고 볼 때 유산취득세방식은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의 취득재산가액에 기초를 두어 누진과세하므로 응능부담원칙에 보다 적합

다. 법정상속분 과세방식

■ **유산취득세방식에 유산세방식을 가미한 과세유형이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이며, 일본이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 일본의 경우에는 1958년 순수한 유산취득세방식의 폐해[30]를 줄이기 위해 유산취득세방식을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으로 전환
- 법정상속분방식은 우선 공동상속인이 전체 부담할 상속세 총액을 결정하고 이를 각 상속인에게 배분(할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상속세 총액은 유산액과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이라는 2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유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분할 한 후 각각에 누진세율을 곱한 것을 합산하여 산출함

30) 1957년 일본세제조사회의 상속과세제도에 대한 특별답신에서는 일본의 유산취득세방식에 대한 폐해를 첫째, 유산분할 관습이 정착되지 않은 점, 둘째,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을 가장한 신고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농업용자산이나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은 분할이 곤란하여 세부담이 무겁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立岡健二郎, "相続税の課税方式に関する理論的考察— 取得税方式への回帰に向けて —",「ＪＲＩレビュー」Vol.4, No.5, 2013. p. 95.)

[그림 4] 법정상속분방식의 구조(예시 : 배우자 + 자녀2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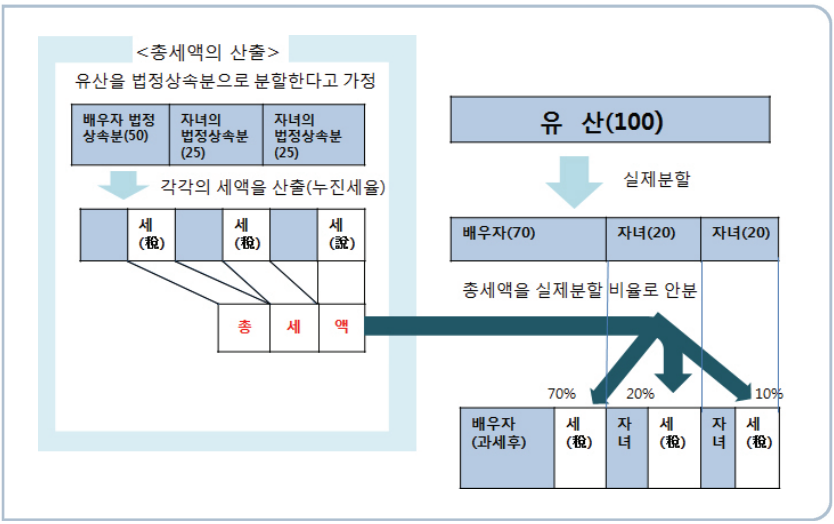

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선택기준

- 상증세제의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일반적 기준은 공평성(응능부담)기준, 부의 분산기준(부의 집중억제), 세수기준, 세무행정기준 등으로 볼 수 있음[31)]
- 공평성 기준
  -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모두 납세의무자간 수직적공평성과 수평적공평성이 확보됨
    - 유산세방식에서는 수직적공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상속인 관점의 경우이며,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의 부담력을 기준으로 하면 수직적공평성은 확보됨
- 부의 분산 기준
  - 부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는 유산취득세방식이 유산세방식보다 우

31) 金完石, “相続税課税類型の転換に関する研究”, 「立命館法学」 306号, 立命館大学, 2006. p. 205. 및 立岡健二郎, “相続税の課税方式に関する理論的考察— 取得税方式への回帰に向けて —”, 「ＪＲＩレビュー」 Vol.4, No.5, 2013. p. 33 ~ 34.

위에 있음

- 상속세에서는 소득세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됨
- 유산취득세방식에서는 단독 상속인이 전재산을 상속받기보다 복수의 상속인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적어 유산분할을 유도할 수 있음
- 유산세방식에서는 유산분할전에 세부담이 결정되어 유산 분할에 따른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산분할을 촉진할 유인이 없음

■ 세수기준

- 세수측면에서는 유산세방식이 유산취득세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큼
  - 유산세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세액이 유산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누가 어느 정도 상속받았는지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유산취득세방식은 피상속인이 유산을 넓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 세수는 적게 되며, 특히 실제 유산분할과 다른 신고를 행하여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경우 세수감소 발생

■ 세무행정기준

- 유산세방식이 세무행정 부담이 적음
  - 유산세방식에서는 유산분할전에 총세액이 결정되므로 과세당국이 피상속인의 유산액만을 조사하면 되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구조가 간단하고 알기 쉬움
  - 유산취득세방식은 과세당국이 유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상속인마다 세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세무행정 부담이 큼

[표 2]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선택기준별 비교**

구분	유산세방식	유산취득세방식
과세근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제상 우대 등으로 향유한 세부담 경감분을 청산	• 상속에 의한 유산취득은 무상소득이며, 상속인의 담세력을 증가시킴
	• 피상속인의 노후부양을 위해 사회가 부담해온 분을 청산	
	• 부를 재분배 함 (세대간의 공평·격차시정에 초점)	• 부를 재분배 함 (현역 세대내의 공평·격차시정에 초점)

구분	유산세방식	유산취득세방식
수직·수평적 공평성	• (피상속인 간) 확보됨	• (피상속인 간) 확보됨
부의 집중억제 기능	• 낮음. 유산분할을 촉진할 유인이 없음	• 높음. 누진세율의 경우 유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면 할수록 세부담이 감소되어 유산분할을 촉진시킴
세수와의 관계	• 중립적. 세액은 기본적으로 유산에 따라 결정되며, 유산분할이 어떻게 되든 세액은 변화 없음	• 상대적으로 낮음. 유산분할이 많을수록 세수가 감소. 유산분할에 따른 세부담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많이 분할하는 것처럼 허위신고 하는 등 조세회피행위 발생
세무행정의 부담	• 가벼움. 피상속인의 유산만 조사	• 무거움. 모든 상속인과 그 취득자산을 조사

자료: 立岡健二郎, "相続税の課税方式に関する理論的考察— 取得税方式への回帰に向けて —", 「ＪＲＩレビュー」 Vol.4, No.5, 2013.

5. 우리나라 상증세제의 변천

■ 우리나라의 상증세제는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조세상속세령」의 제정·공포로 처음 도입된 이후 1950년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각각 제정·공포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상증세제가 도입되었음

■ 1952년 「증여세법」을 폐지하고 증여세 부분이 「상속세법」에 편입되었으며, 1996년 「상속세법」 전면개편시 그 법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가. 상속세

■ 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을 제정·공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상속세로 개편하였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32)]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고,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

32) 상속세제의 변천 부분은 해당 연도의 개정법률 및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를 참고로 작성.

- 기초공제 직계비속 100만원, 기타의 자는 70만원으로 하고, 부양가족공제는 호주상속으로 과세가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각 1인 20만원을 공제, 호주상속을 같이 하지 않는 재산상속 과세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만18세 미만 여자와 장애인 각 20만원 공제
- 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 15단계 초과누진세율

■ **1996년「상속세 및 증여세법」전면개편 이전의 주요 상속세 개정현황**

- 1960년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구분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액의 차등적용을 폐지하면서 공제액을 인상하였으며, 1967년 세율을 5%~70%로 조정하고 신고납부세액 공제제도 신설
- 1974년 세율을 15단계 10% ~ 75%로 인상하였고, 1976년 신탁재산 비과세 한도액(500만원) 및 미성년자 공제의 인원한도(2인)를 신설
- 1978년 농지상속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1979년에는 배우자 공제액을 인상하고 세율을 15단계 7%~67%로 인하
- 1981년 세율을 15단계 7%~60%로 인하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는 반면, 주택상속 공제제도,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제도, 산림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무신고 가산세제도를 도입
- 1982년 기초공제액 및 인적 공제액을 인상하고, 주택상속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상속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5년으로 연장
- 1988년 인적 공제액을 인상하고, 세율을 8단계 5%~55%로 인하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
- 1990년 상속재산가액의 현실화(토지 공시시가로 평가)에 따른 각종 공제액을 인상하고, 세율을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 하였으며, 성실신고 납부유도를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신설
- 1993년 장례비용과 배우자공제액을 인상하고, 세대생략 상속에 대하여 20% 할증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최고세율을 50%로 인하
- 1994년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보완하고 농지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였으며, 세율체계를 종전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여 1996.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1996년에는 변화된 사회경제여건을 반영[33]하여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이**

33) 종전 상속세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총 17회의 크고 작은 부분개정을 통해 사회경제여건의 변화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5단계로 완전 통합하였고, 세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45%로 조정
- 배우자공제를 종전의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방식을 폐지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원)
- 종전 물적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액을 인상하여 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가액과 일괄공제액(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금융재산의 보유를 유도하고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손실공제를 신설
-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종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고액재산가에 대한 인별관리체계의 구축을 명문화

■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면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여건에 따라 부분개정 되어 옴

- 1999년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종전 45%(50억원 초과)에서 50%(30억원 초과)로 높이고 최소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하향조정(50억원→30억원)
- 2000년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2001년에는 개발예정지역에 속한 금양임야[34] 등에 대한 2억원의 비과세한도를 설정하고 장묘문화 개선(매장→화장)을 지원하기 위해 5백만원 이내 납골사용비용 장례비용 추가
- 2003년 감정평가비용공제를 신설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2007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상장주식 물납에 따른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 제외

반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로 과거와는 달리 상속·증여세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였음

34) 금양임야(禁養林野)란 함부로 나무나 풀을 베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함

- 2008년 가업상속 공제비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30억원에서 60~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거주택에 대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동거주택 인정범위 신설
- 201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중견기업(매출액 1천5백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고용유지요건을 추가하였으며, 2011년 가업상속공제율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100~300억원으로 인상
- 2012년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인 중견기업의 규모를 확대(매출액 2,000억원 초과)하였으며, 2013년에는 동 대상기업의 매출액을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200~500억원으로 인상
-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자녀 및 연로자 공제 3천만원→5천만원,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 연간 500만원→연간 1천만원)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조정(40%→80%)

나. 증여세

■ **정부수립 후 1950년 「상속세법」과 별도로 「증여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나 절가(絶家)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산취득에 따른 관련 공과금을 공제하여 산정
- 세율은 16단계 15%~90%의 초과누진세율로 하고, 증여일로부터 30일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1952년 11월 증여세법을 폐지하고 증여세 부분은 상속세법에 통합되었으며,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개편 이전의 주요 상속세 개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1952년 증여세법을 상속세법으로 통합하면서 친족에게 증여하거나 절가(絶家)로 인하여 친족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경우로서 그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재산상속으로 보아 재산취득자에게 상속세를 부과
- 1960년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 누구에게나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웠으며,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50만환을 공제하는 한편, 증여세 세율을 1종(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은 10단계 6%~35%로, 2종(친족이외의 자로부터 받는 증여)은 6단계 15%~35%로 신설
- 1967년 세율구분을 폐지하면서 8단계 10%~70%로 인상하였으며, 1971년 포괄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좁혔으며[35], 공제액을 상향조정(친족공제액의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 그 이외의 경우 100만원)
- 1974년 명의신탁 및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양도의 간주증여규정을 신설하고, 세율을 14단계 10%~75%로 인상하였으며, 1979년에는 세율을 14단계 7%~67%로 인하
- 1980년 포괄과세를 폐지하고 열거주의를 도입하였으며, 1981년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고, 1982년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양도하는 경우 등)
- 1988년 세율을 8단계 5%~60%로 인하하였으며,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
- 1993년 증여재산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세대생략증여에 대하여 20% 할증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면서 최고세율을 55%로 인하
- 1994년 배우자 증여공제액(5천만원+500만원×결혼연수)을 인상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소지를 축소하였으며 세율을 4단계 15%~40%로 단순화하여 1996년부터 적용

■ **1996년에는 변화된 사회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포괄적 규정의 적용범위를 좁힌 이유는 특수관계가 없는 이상 간접적·탈법적 방법의 증여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특수관계자라면 "이익"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증여세를 매기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라면 증여를 받거나 보험금 등 법률이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범위를 좁힌 것임

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의 통합
- 배우자 증여공제(5년간 5억원 공제)를 단순화 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 폐지
-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신설
- 증여세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면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증여세는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여건에 따라 부분개정이 되고 있음**

- 1997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사채의 발행 및 고가의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규정을 연도 중 신설하였고 불공정 합병시와 결손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보완
- 1998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을 삭제[36]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적법하게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2000년 합병 등에 대한 6개 유형의 자본거래[37]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 위 6개 유형의 자본거래 외의 나머지 8개의 증여의제[38]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
- 2004년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창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
- 2006년 예금보험기금 등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예금보험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하였으며, 2007년 배우

36) 1997년 10월 20일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의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하였음(헌법재판소 1997.10.20. 결정 96헌바14)

37) 합병 · 증자 · 감자 · 전환사채 등 이익 ·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 상장 등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38) 8개의 증여의제란 신탁이익 · 보험금 · 고저가 양도시 · 채무면제이익 · 토지무상사용이익 · 무상금전대부 · 합병 등 시세차익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말함

자 증여재산공제액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

- 2011년 공정사회 구현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신설하였으며, 2012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개선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등 신설
- 2013년 증여재산공제의 인상(증여자가 직계존속의 경우 수증자 성년 3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 2천만원)
- 2015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조정(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 →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 → 1천만원)

Ⅱ. 상속세의 과세체계

1. 개요 ····· 35
2. 납세의무 ····· 36
3. 과세대상 상속재산 및 과세가액 산정 ····· 41
4. 상속공제 ····· 46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5
6. 신고 및 납부 ····· 60

Ⅱ. 상속세의 과세체계

1. 개요

■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동 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상속인이 상속받은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세율은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그림 5] **상속세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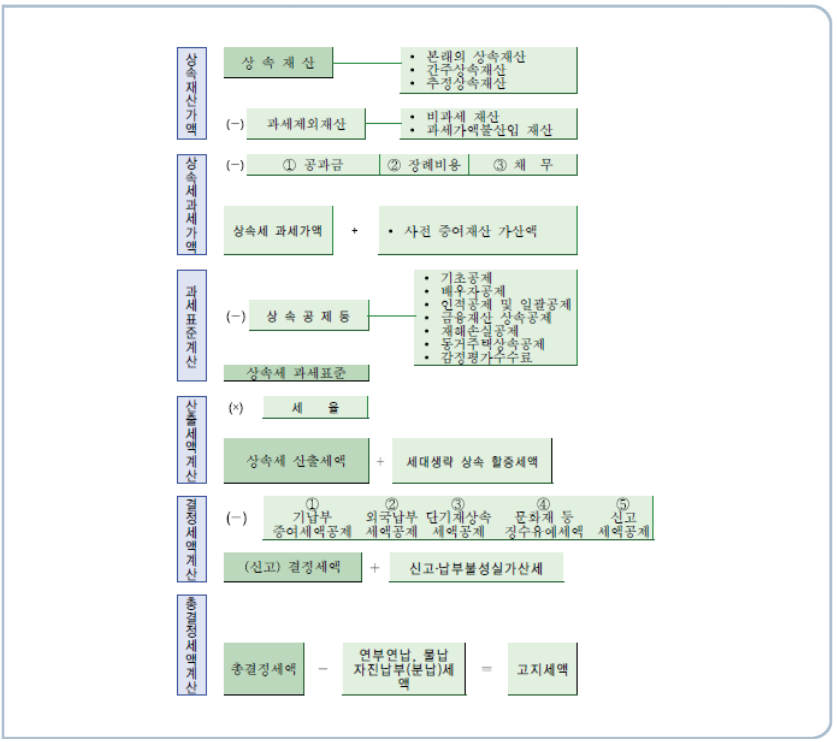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5.

2. 납세의무

가.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 납세의무의 성립

-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며,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로 그 요건이 충족(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2호[39])
- 상속세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필요적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상의 지위(권리 · 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

■ 납세의무의 확정

- 상속세는 정부결정방식으로 납세의무를 확정[40]하고 있음(국기령 §10의2 i)
  -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의 부과결정(과세관청의 자체적인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됨
-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해당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효력은 없으며, 단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필요한 근거자료[41]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성격으로 협력의무 이행에 대한 효과만 지님

■ 납세의무의 소멸

- 납부에 의한 소멸
  - 납부의무의 소멸원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

39) 이하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국기법 §1① i '로 나타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은 '국기령 §1① i '로 나타냄.

40)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는 신고납세방식과 정부부과(결정)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목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국기령 §10의2 i)

41) 상속재산현황 및 공제대상명세 등

- 부과권은 조세채권 및 채무의 확정으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음

[표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제척기간**

구 분	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포함)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5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기타의 경우	10년

- 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소멸
  - 징수권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는 10년)

나. 납세의무자

(1) 의의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자 포함)과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및 특별연고자가 됨**

- 특별한 경우 추정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됨(국기법 §82⑤)

■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상증세법 §3의2)**

-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4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인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를 포함**

-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자연인임
- 상속포기자 또는 상속결격자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됨

■ **「민법」상 상속인의 자격이 자연인인 이유는 동법상 '상속의 순위'를 혈연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승계됨
  - 원칙적으로 「민법」상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갖게 되므로 태아는 「민법」상 자연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인정
- 일반적으로 영리법인[43]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
  - 현행 법인세법의 소득개념상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로 과세

■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여**

-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는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44]가 있는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를 말함
- 상속포기자는 본래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나 스스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 자로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에

42)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란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 가운데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함 (상증세령 §3①)

43) 비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종교사업·자산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44) 예를 들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등을 말함

해당 되지 않음

■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여 하고 있음**

- 특별연고자란 상속인이 없는 망인(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망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기타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함
- 특별연고자는 「민법」상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속재산이 남아 있고 특별연고자에게 상속결격자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에 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기득권을 부여하고 있음

(3)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 **상증세법상 상속인 이외에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수유자[45]가 있음**

- 수유자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를 말함
-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자, 사인증여받은 자 및 증여채무를 이행받는 중에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유증받은 자 및 사인증여받은 자**

- 유증이란 유언에 따라 증여를 받는 법률행위로서 「민법」상 상속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1073),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민법 §562)
- 유증 및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속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세법은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봄

■ **증여채무를 이행받는 중에 있는 자**

- 증여자(피상속인)가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증여행위를 이행

45) 상증세법상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증자로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유자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민법과는 차이가 있음(상증세법 §2)

구분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사람
민법	수증자	수증자 또는 수유자
상증세법	수증자(동법 제2조제9호)	수유자(동법 제2조제5호)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수유자는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됨

- 이는 사인증여와 그 법률적 행태가 유사하므로 상증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봄

(4) 연대납세의무

■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있으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상증세법 §3의2)**

-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있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공동상속인(수유자)의 개인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	상속받은 재산(자산-부채)	-	개인별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액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세능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음

■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 민법상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은 공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민법 §1006), 국기법상에서도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국기법 §25①)하고 있기 때문임[46]

46) 재무부, 「간추린 개정세법」, 1982. p. 174. 재인용, 이광재,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5. p. 122.

3. 과세대상 상속재산 및 과세가액 산정

가.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47]을 말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상증세법 §2)**

-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48]

■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의 범위에는 민법상**

47)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됨(상증세법 제3조). 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이 미치고,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권이 미치기 때문임

48)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0-3)

1. 물권, 채권, 영업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을 차감한 잔액
4.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
6.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
7.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
8.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

한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0-4)

1.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
3.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
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6.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 재산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으로 대별됨

- 민법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과 수유자가 유증을 받는 재산을 포함하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함
  - 민법상 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권(物權), 채권(債券),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을 말함
- 간주 상속재산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함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으로 보험금[49], 신탁재산[50], 퇴직금[51] 등이 있음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 없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함
  -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처분으로 받은 현금 등[52], 현금인출[53], 채무부담[54] 등이 있으며,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추정시 그 반대되는 처분용도나 인출용도에 대한 사실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음

49) 보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령인이 직접 원시취득한 것이 되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 등이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

50)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51)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봄

52)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53)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54)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1) 계산구조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이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에서 상속세 비과세항목, 과세가액불산입항목, 공과금 등의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산정**

[표 4]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채무부담의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익신탁재산 등
(-) 공제금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특례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 상속세 과세가액	

(2) 비과세

■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사회정책 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비과세항목은 상증세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비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상속행위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5] 상속세의 비과세 항목

구분	내용	조항
상속행위에 대한 비과세	전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11조제1항
	전쟁 등의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얻은 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11조제2항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상증세법 제2조제1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토지	상증세법 제2조제2호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재구	상증세법 제2조제3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정치자금	상증세법 제2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상증세법 제2조제5호
	이재구호물품 등으로 유증 등을 한 재산	상증세법 제2조제6호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상증세법 제2조제7호

(3) 과세가액불산입

■ **과세가액불산입이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항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만, 사후관리 준수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
-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항목에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공익신탁재산으로 대별됨(상증세법 §16 및 §17)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육성하여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및 공익신탁재산은 과세가액불산입하여 조세지원함

[표 6]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과 비과세의 비교

구분	상속세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납세의무성립과정	과세권을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일부재산을 제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세과세가액 차감여부	차감	차감
법 적용 이후 사후관리 여부	불필요	필요

자료: 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4) 공과금 등의 공제금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상증세법 §14①)**

-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재산 중에 속해 있는 공과금·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변제해야 할 필연적 의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
-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할 필연적인 부담의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표 7] **공과금 등의 공제금 내용**

구분	내용	공제금액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및 기타의 공과금	그 공과금 등의 가액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500만원~1,000만원(봉안시설·자연장지를 이용한 경우 그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채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그 채무가액

(5)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

-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함[55]

55) 헌법재판소 2006.7.27. 결정 헌재 2005헌가4

[표 8]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구분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상속인의 아닌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4. 상속공제

가. 개요

■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상증세법** §18~§24)

-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임
-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과 가업 · 영농상속공제 및 금융재산 ·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의 성격으로 대별

■ **공제가 가능한 상속공제액은 위의 상속공제의 종류별 합계금액과 공제적용 종합한도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음(상증세법** §24)

- 공제적용의 한도인 종합한도액이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
  -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사전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 차감한 금액)

[표 9] 상속공제의 내용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 2억원
배우자공제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 ② 위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5,000만원(65세 이상)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가운데 큰 금액 선택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10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00억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 500억원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15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자산가액의 20% 공제(한도 :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원 미달시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
재해손실 공제	• 상속개시 이후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범위내에서 공제

나. 인적공제 등

■ 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상증세법 §18①)
-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겨진 유가족(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56]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57]

56)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말하며,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금액 5억원을 일괄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4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 배우자 상속공제한도(30억원) 범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함(상증세법 §19)

배우자상속공제 = MAX[Min(1, 2), 5억원]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 Min[①, ②]
①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② 30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58]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공제(상증세법 §20)

[표 10] **그 밖의 인적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 (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연수)

■ 일괄공제

- 일괄공제는 상속인 및 그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의 상속세

2.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것
4.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

57)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 간의 이전될 때 과세한다는 이론적 측면에서 부부사이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동일한 세대간 이전이라는 점과 부부가 혼인 중에 마련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 감안

58) 기타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함(상증세령 §18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보장하는 제도임[59]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없는 경우 5억원 공제(상증세법 §21)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의 공제적용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11] **일괄공제의 적용**

구분		일괄공제금액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 기한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공제 적용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 불가(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 ☞ 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 + 배우자공제 적용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 혼자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적용

다. 물적공제

(1)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육성·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 가업의 영속을 위한 지원책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술개발 등의 투자재원마련을 장려함과 동시에 다년간 축적된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및 그 활용을 위한 것임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상증세법 §18② i)**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

5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세액계산절차를 단순화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용이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표 12] 가업상속공제 요건

구분	내용
가업의 요건	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할 것 ③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30%)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③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④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함으로써 인수하게 되는 가업재산을 말하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음[60]

[표 13]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개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법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등 ×(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주비율)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액은 달리 적용

60) 유류분상속재산은 제외함(상증세령 §15⑤ 단서)

[표 14] 가업상속공제금액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공제한도액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

[표 15] 가업상속공제의 추징사유 및 추징대상금액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추징사유	기간	기간별추징률
① 가업용 자산의 10년 이내 20%(5년 이내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7년 미만	100%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7년 이상 8년 이내	90%
④ 각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8년 이상 9년 이내	80%
⑤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9누적)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9년 이상 10년 이내	70%

(2)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함)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며 (상증세법 §18②ii), 이는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

-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경영에 의해 형성된 재산인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상속인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추가 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

■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구분
-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재산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표 16]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구분		내용
소득세법	영농재산의 요건	다음의 영농대상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②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③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④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일 것 ③ 실직적으로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 피상속인일 것
	상속인의 요건	①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 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상속인일 것 ③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받을 것
법인세법	영농재산의 요건	상속재산 중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에 해당하는 주식일 것=법인의 주식 등(1-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비율)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일 것 ③ 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 피상속인일 것 ④ 다수의 최대주주 중 피상속인 1명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인의 요건	①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 영농법인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③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을 것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재산 등을 말함

[표 17]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구분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전·답, 과수원, 초지, 일정요건의 산림지, 어선, 어업권 등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영농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1-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주비율)

■ **영농상속공제금액 및 사후관리**

- 영농상속인이 농지 등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 농지 등의 가액을 공제하되,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함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영농상속공제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추징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다음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추징

$$\text{영농상속공제금액} \times \frac{\text{영농상속받은재산중처분재산가액}}{\text{영농상속받은재산가액}}$$

(3) 기타 물적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상증세법 §22)**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어 세원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재산의 보유시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61]

[표 18]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20%
10억원 초과	2억원

■ 재해손실공제(상증세법 §23)

- 재해손실공제는 상속개시 이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재난이 발생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는 경우 재난[62]을 받은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납세자가 재난을 받은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는데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할 목적으로 도입
-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동거주택상속공제(상증세법 §23의2)

-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비속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가액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 한도)
  -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61)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함(상증세법 §22②)

62) 재해손실공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함(상증세령 §20①)

-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을 것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 무주택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63]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함(상증세법 §25①)**

-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유형은 유산세형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든 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협의분할하거나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

■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음**

[표 19]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구분	내용
	•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총상속재산가액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금양임야·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등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공제금액	• 사전증여재산 • 특례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63)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정) 해당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2.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수수료
3. 서화 · 골동품 등 예술적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전문가 감정수수료

구분	내용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의 과세최저한**

-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상증세법 §25②)

나. 결정세액의 계산

■ **상속세는 정부부과(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가감하여 산정**

[그림 6] **상속세 결정세액 계산구조**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 세액공제
= 상속세 결정세액

(1) 세율

■ **상속세 세율[64]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체증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단계의 10%에서부터 30억원 초과 단계의 50%까지 적용세율의 변동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단계임

[표 20]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최근의 상속세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에 나타낸 표와 같음**

[표 21] **연도별 세율 개정연혁**

1996.1.1. 이전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2억5천만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5천만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5억5천만원 초과	40%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할증과세를 적용(상증세법 §27)**

64) 동 세율은 증여세 적용시에도 동일함

- 조부(祖父)단계에서 손(孫)의 세대로 직접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자(子의) 단계에서 손(孫)의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과세를 함
- 다만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음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미성년자 상속재산가액 20억 초과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text{할증과세 금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times 30\%$$

(3)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65]
-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음이 산정함(상증세법 §28)

증여세액 공제금액 = Min[①, ②]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할증세액·가산세 제외)
② 공제 한도액(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

65) 상속세과세가액계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이것은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고 누진세율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나 외국소재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함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함(상증세법 §29)

외국납부공제세액=Min[①, ②]

① 상속세 산출세액 × $\frac{\text{외국법령에 의해 상속세 부과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text{상속세 과세표준}}$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라 함은 상속개시 후 단기간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66]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상증세법 §30)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

66)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세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임

[표 22] 재상속분의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6. 신고 및 납부

가. 신고기한 등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상증세법 §67)**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기간은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임(상증세법 §69)

[표 23] 상속세 신고기한

구분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수유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으로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자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상증세법 §1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9개월) 이내
기한의 특례 (국기법 §5)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기한의 다음날
	신고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상속세의 경정청구 특례

-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상증세법 §69)
- 경정청구특례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할증평가한 주식을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납부 등

■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의 이전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원활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납부제도를 두고 있음**

[표 24] **상속세의 납부방법**

구 분		내 용	비고
현금납부	자진납부	원칙적인 납부방법	1회에 완납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없이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물납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음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중 그 재산가액의 상당액을 징수유예함

■ **자진납부**

-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6개월 이내)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자신이 산출한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하여야 함(상증세법 §70)

■ **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라 함은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분납 및 연부연납**

- 상속·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제도[67]를 두고 있으며(상증세법 §71), 연부연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요건 : 납세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신청서 제출
  - 허가 및 통지 :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허가 여부를 통지
  - 연부연납시간 : 허가일로 5년이내. 다만 가업상속재산 50% 미만인 경우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이내, 50%이상인 경우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
  - 연부연납금액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1)

■ **물납(物納)(상증세법 §73)**

-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의 실물자산에 의한 납부, 즉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68]
-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50%를 초과할 것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과세표준 신고기한(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것
  -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닐 것
-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함

■ **문화재자료·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함

67) 상속·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의 무리한 유동화를 강요받을 우려가 있어 상증세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음

68)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의 무리한 유동화를 강요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에서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음

-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보호구역 내 토지·박물관자료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함

$$\text{징수유예세액} = \text{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text{(문화재자료 등·보호구역 내 토지·박물관자료 재산가액}}{\text{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Ⅲ. 증여세의 과세체계

1. 개요 ····· 67
2. 납세의무 ····· 68
3. 과세대상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산정 ····· 72
4. 증여공제 ····· 79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80
6. 신고 및 납부 ····· 84

Ⅲ. 증여세의 과세체계

1. 개요

■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수증자가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채무부담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10년 내 재차증여재산을 합산 한 후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세율은 상속세와 같이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그림 7] **증여세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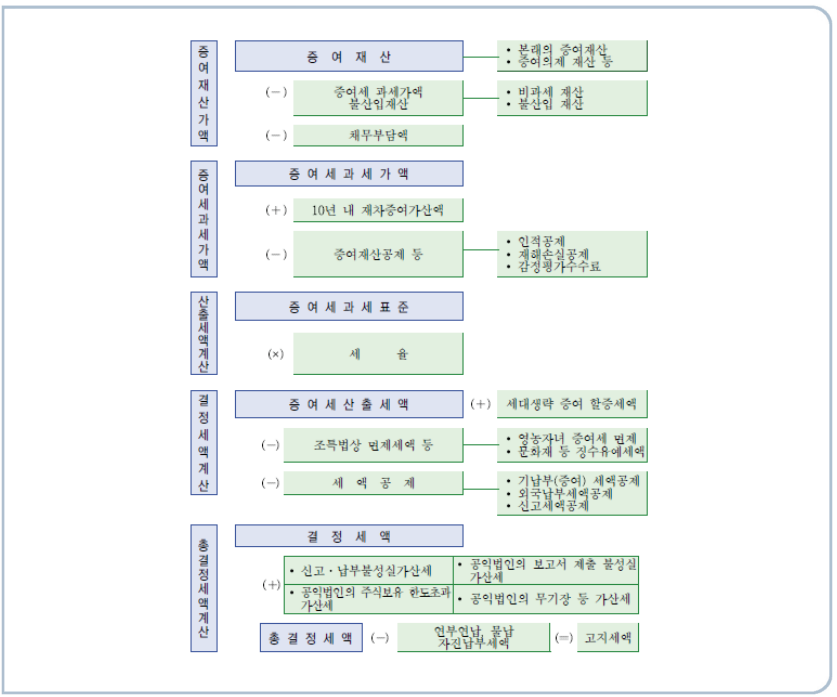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5.

2. 납세의무

가.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 증여세의 성립

-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타인으로부터 부의 무상이전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당사자인 상속인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거래사실로 인하여 성립
  - 「민법」은 거래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법률효과를 통한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증여거래의 성사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증세법은 수증자의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향유를 중심으로 증여거래의 성사 여부를 판단
- 따라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

■ 증여세의 확정

-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
-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위한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성격의 협력의무이행 효과만을 지님

■ 증여세 납세의무의 소멸

-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조세의 납부를 통하여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납부에 의하지 않고 소멸할 수도 있음
- 납부에 의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에 의함
  -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세와 동일

나. 납세의무자

(1) 의의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로서 상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 자를 말함(상증세법 §4의2)**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증여재산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및 국외법인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의 납세의무**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증여세 면제
-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자연인(개인)과 같이 납세의무를 짐
  -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불산입

[표 25] **수증자의 권리주체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수증자	과세대상 세목
개인	증여세
영리법인	법인세
비영리법인	증여세(공익법인은 과세가액불산입)

(2) 연대납세의무

■ **상증세법은 증여세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수증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채권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우고 있음 (상증세법 §4의2⑤)**

-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증여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 등 기타의 세무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워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임
- 수증자가 담세력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증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 등을 증여받아 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없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명의신탁자가 향유하는 것이나 이를 증여로 의제함에 따라 그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자로써 과세당국이 조세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수증자의 담세력이 충분히 존재할지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 민법상 증여와 같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명백하게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액과 거래가액 등이 일정 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함
  - 연대납세의무의 면제대상은 주로 상증세법 §35 ~ §42 및 §45의3 등의 예시적 규정 항목임

[표 26] 수증자의 증여세면제규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면제규정의 비교

증여유형			무능력 수증자의 증여세면제	증여자의 연대 납세의무면제
개별적 예시규정	일반거래에 대한 예시규정	① 신탁이익의 증여	X	X
		② 보험금의 증여	X	X
		③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O	O
		④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O	O
		⑤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O	O
		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X	O
		⑦ 급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O	O
	자본거래에 대한 예시규정	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X	O
		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X	O
		③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X	O
		④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X	O
		⑤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X	O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X	O
		⑦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X	O
포괄적 예시규정		① 그 밖의 이익의 증여	X	O
증여추정		①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X	X
		②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X	X
증여의제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X	X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X	O

자료: 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3) 납세의무의 한도

■ **수증자의 납세의무 한도**

- 수증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한도없이 전체 증여세의 납부책임을 짐
  - 증여세의 경우 상증세법 제4조의2제1항에서 수증자의 납세의무만을 언급할 뿐 별도의 납부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한도없이 전체 증여세의 납부책임을 짐

- 증여세의 경우 상증세법 제4조의2제3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한도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

[표 27]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한도의 비교**

구분	상속세	증여세
본래의 납세의무의 한도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본래의 납세의무를 짐	수증자는 한도없이 세액전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짐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짐	증여자는 한도없이 수증자의 세액 전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짐

3. 과세대상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산정

가. 과세대상 증여재산

(1)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상증세법 §2vii)**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증세법 제4조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을 규정하고 있음**

- 상증세법은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민법에 따른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의무상이전이 아니더라도 변칙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 된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됨

[표 28] 증여세 과세대상

구분	제목 및 내용
일반적 증여재산 유형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로 인한 당초상속분 초과 취득분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상 개별적 예시규정을 둠)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
	보험금의 증여(제34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6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7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2)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1조의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4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45조)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증여재산에 대해 법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음

[표 2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 종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건물이나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주식 및 출자지분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일도 전명의개서하는 경우 명의 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이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나. 과세가액 산정

(1) 계산구조

■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증여재산인 증여세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금액임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은 증여자별·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일정기간 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

- 누진세율에 의한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차례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표 30] **증여세 과세가액계산 구조**

구분	내용
증여재산가액	·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 증여추정(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 재산취득자금) · 증여의제(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비과세 및 면제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 기타법상 비과세·감면·면제·과세특례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 공익신탁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부담부증여시채무 인수액	· 증여재산의 담보한 채무 · 임대자산의 경우 임대보증금
(+) 증여재산 가산액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1천만원 이상) · 합산배제 증여재산가액 제외
= 증여세 과세가액	

(2)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재산종류와 거래의 무상이전 유형에 따라 계산함**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
-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법령[69]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69) 상증세령 제23조제1항에서는 동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1에서 2~4까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함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법령[70]으로 정한 금액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그 밖의 증여받는 이익(예시규정) 등의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조세정책상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권자인 정부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포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자산은 상증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상증세법 §46)**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내국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정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정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법정 보험의 보험금
-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70) 상증세령 제23조제2항에서는 동 방법에 다음의 1~3까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1.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2.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3) 과세가액불산입되는 증여재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상증세법 §48)**

- 민간단체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될 경우 증여세 추징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취득에 사용하는 경우(5% 또는 10% 초과 취득)[71]

■ **공익신탁재산(상증세법 §52)**

- 증여자가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 공익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상증세법 §52의2)**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

71)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상증세법 §48②)

1.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 해당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경우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는 경우

(4)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시 채무인수액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상증세법 §47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함(소득세법 제88조[72])**

-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며, 부담부증여 계약은 증여계약이 주(主)이고 부담계약은 종(從)이므로 증여가 무효이면 부담도 당연히 무효가 됨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증세법 §47③)**

-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3]에는 채무로서 공제

72) 이하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는 '소법 §1① i '로 나타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조제1호는 '소세령 §1①'로 나타냄

73)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면 다음과 같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위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 : 금융거래 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5) 10년 이내 재차증여시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상증세법 §47①)**
  - 일정기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수차례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합산배제 증여재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 증여공제

가.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상증세법 §53)**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74], 직계비속[75]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 **증여재산 공재금액은 증여를 받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각 항목별 증여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임**

74)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

75)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표 31] 증여재산공제의 변천

구분		증여재산공제액					합산기간
		1997.01.01. 이후	2003.01.01. 이후	2008.01.01. 이후	2014.01.01. 이후	2016.01.01. 이후	
증여자	배우자	5억원	3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10년
	직계존속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3,000만원				5,000만원	
	기타 친족주)	500만원				1,000만원	
	그 외의 자	공재액 없음					

주: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자료: 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나. 재해손실공제

■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손실가액 상당액을 공제함(상증세법 §54)**

- 재해손실공제에 대해서는 동법 제23조의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준용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종류별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2003년 및 2012년 세법개정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 및 일반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과세표준을 산정

■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함

[표 32]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구분	내용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증여공제(10년 이내 6억원)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10년 이내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 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간의 증여공제(10년 이내 1,000만원)
-재해손실공제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증여재산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500만원 한도) •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수수료(기관별 1,000만원 한도)
=증여세 과세표준	

■ 그 밖의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및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만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배제대상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배제하되,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수준인 3천만원의 개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표 33] 개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구분	내용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표준=명의신탁재산가액-감정평가수수료공제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의제가액-감정평가수수료공제
③ "②"이외 합산배제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3천만원-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결정세액의 계산

■ 증여세는 정부부과(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그림 8] 증여세 결정세액 계산구조

증여세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 세액공제
(+) 가산세
= 증여세 결정세액

(1) 세율

■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

- 종전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높아 증여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를 제거할 목적과, 장기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1995년도 세법 개정시 증여세율을 상속세율과 일치시킴

[표 34]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 20억 초과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상증세법 §57)**

- 조부(祖父)에서 부(父)로, 다시 부에서 자(子)로 2번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 조부(祖父)에서 손자(孫子)로 직접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 **증여세 할증과세액의 계산**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써 할증과세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旣)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

$$\text{할증과세액} =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times \frac{30}{100} \text{ 기할증 산출세액}$$

(3) 세액공제

■ **납부세액공제**

-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을 다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상증세법 §58)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납부세액공제액=Min[①, ②]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한도: 증여세산출세액 × $\frac{\text{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text{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공제**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상증세법 §59)
-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외국납부공제세액=Min[①, ②]

① 증여세 산출세액 × $\frac{\text{외국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text{증여세 과세표준}}$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액

6.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상증세법 §68①)**

-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41의3) 및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41의5)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표 35] **증여세 신고기한**

구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자(수증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이익을 얻는자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기한의 특례 (국기법 §5)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기한의 다음날
	신고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주: 1. 정산기준일이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함(상증법 §41의3②)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자진납부**

-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함께 자신이 산출한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해야 함

■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특례, 분납 및 연부연납,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등에 관한 내용은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

- 2015년말 상증세법 개정으로 증여세에 대한 물납은 인정하지 않음

Ⅳ. 국내·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국내외 상증세 부담현황 ····· 89
2.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제 개편동향 ····· 98
3. 우리나라의 상증세제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106

Ⅳ. 국내·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국내외 상증세 부담현황

가. OECD 국가의 상증세 부담현황

(1) GDP 대비 비중

■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의 GDP대비 상증세 부담 평균은 약 0.13%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로 0.78%를 나타내고 있음**

- OECD 국가 가운데 상위 5개국은 벨기에(0.78%), 프랑스(0.49%), 일본(0.32%), 핀란드(0.31%), 한국(0.3%)임
- OECD 국가 가운데 하위 5개국은 상증세를 폐지한 국가를 제외하고 포르투칼(0.001%), 체코(0.005%), 오스트리아(0.006%), 폴란드(0.015%), 아이슬란드(0.018%)임
- 우리나라는 0.3%로 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

[표 36] OECD국가의 GDP대비 상증세 부담비중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주	0	0	0	0	0	0	–	–	27
오스트리아	0.056	0.047	0.052	0.012	0.011	0.007	0.006	0.001	24
벨기에	0.295	0.326	0.427	0.620	0.641	0.703	0.783	0.7	1
캐나다	0	0	0	0	0	0	0	0	27
칠레	0.033	0.045	0.026	0.035	0.025	0.052	0.033	0.021	19
체코	–	0.025	0.025	0.006	0.109	0.084	0.005	0	25
덴마크	0.256	0.228	0.215	0.202	0.26	0.216	0.208	0.2	8
에스토니아	–	0	0	0	0	0	0	0	27
핀란드	0.161	0.169	0.27	0.207	0.201	0.255	0.319	0.243	4
프랑스	0.39	0.346	0.462	0.385	0.418	0.458	0.490	0.478	2
독일	0.118	0.096	0.141	0.171	0.157	0.156	0.164	0.187	10
그리스	0.308	0.268	0.262	0.072	0.059	0.047	0.054	–	17

구분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헝가리	–	0.047	0.041	0.023	0.023	0.02	0.018	0.019	22
아이슬랜드	0.062	0.083	0.109	0.161	0.076	0.108	0.13	0.132	15
아일랜드	0.128	0.138	0.209	0.143	0.142	0.163	0.159	0.192	11
이스라엘	–	0	0	0	0	0	0	0	27
이탈리아	0.052	0.06	0.081	0.03	0.031	0.037	0.039	0.038	18
일본	0.418	0.533	0.349	0.26	0.311	0.317	0.326	0.356	3
한국	0.179	0.24	0.156	0.243	0.25	0.292	0.3	0.311	5
룩셈부르크	0.101	0.097	0.099	0.127	0.103	0.163	0.155	0.149	13
멕시코	0.001	0	0	0	0	0	0	–	27
네덜란드	0.201	0.237	0.331	0.273	0.239	0.214	0.266	–	6
뉴질랜드	0.105	0.003	0.002	0.001	0	0	0	0	27
노르웨이	0.059	0.101	0.084	0.092	0.063	0.064	0.073	0	16
폴란드	–	0.013	0.023	0.02	0.018	0.018	0.015	–	23
포르투갈	0.132	0.064	0.08	0.001	0	0	0.001	0	26
슬로바키아	–	0.009	0.026	0	0	0	0	0	27
슬로베니아	–	0.011	0.009	0.038	0.027	0.026	0.021	0.018	21
스페인	0.134	0.159	0.21	0.219	0.201	0.212	0.235	0.253	7
스웨덴	0.094	0.074	0.107	0	0	0	0	0	27
스위스	0.313	0.263	0.264	0.161	0.139	0.144	0.153	0.153	14
터키	0.018	0.013	0.009	0.02	0.019	0.021	0.022	0.024	20
영국	0.215	0.184	0.216	0.17	0.181	0.189	0.197	0.217	9
미국	0.263	0.261	0.347	0.13	0.093	0.118	0.156	0.15	12
평균	0.152	0.122	0.136	0.112	0.112	0.12	0.127	–	

주: 순위는 2013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2) 총조세 대비 비중

■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의 총조세 대비 상증세의 비중 평균은 약 0.36%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로 1.75%를 나타내고 있음**

- OECD 국가 가운데 상위 5개국은 벨기에(1.75%), 한국(1.24%), 프랑스(1.09%), 일본(1.08%), 핀란드(0.73%)임
- OECD 국가 가운데 하위 5개국은 상증세를 폐지한 국가를 제외하고 포루투칼(0.003%), 오스트리아(0.014%), 체코(0.015%), 헝가리(0.046%), 폴란드

(0.047%)임

- 우리나라는 1.24%로 OECD 34개국 가운데 2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

[표 37] OECD국가의 총조세 대비 상증세 부담비중

(단위: %)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주	0	0	0	0	0	0	0	–	27
오스트리아	0.142	0.113	0.124	0.029	0.026	0.016	0.014	0.003	25
벨기에	0.715	0.765	0.981	1.46	1.492	1.598	1.754	1.568	1
캐나다	0.001	0.001	0.001	0	0	0	0	0	27
칠레	0.194	0.246	0.138	0.181	0.12	0.241	0.166	1.107	17
체코	–	0.071	0.076	0.017	0.328	0.248	0.015	0	24
덴마크	0.575	0.489	0.459	0.445	0.573	0.465	0.437	0.393	13
에스토니아	–	0	0	0	0	0	0	0	27
핀란드	0.375	0.38	0.59	0.507	0.477	0.597	0.728	0.555	5
프랑스	0.951	0.825	1.074	0.926	0.975	1.039	1.089	1.058	3
독일	0.34	0.264	0.389	0.488	0.44	0.43	0.450	0.518	12
그리스	1.228	0.968	0.788	0.223	0.177	0.137	0.158	–	18
헝가리	–	0.115	0.106	0.062	0.063	0.051	0.046	0.05	23
아이슬랜드	0.204	0.275	0.301	0.484	0.221	0.306	0.360	0.341	15
아일랜드	0.394	0.435	0.675	0.519	0.517	0.584	0.549	0.642	11
이스라엘	–	0	0	0	0	0	0	0	27
이탈리아	0.142	0.155	0.2	0.072	0.074	0.084	0.088	0.087	19
일본	1.466	2.019	1.309	0.944	1.087	1.077	1.075	–	4
한국	0.95	1.255	0.726	1.039	1.035	1.178	1.235	1.266	2
룩셈부르크	0.298	0.275	0.268	0.333	0.272	0.421	0.403	0.394	14
멕시코	0.006	0.001	0	0	0	0	0	–	27
네덜란드	0.5	0.61	0.899	0.754	0.666	0.594	0.725	–	6
뉴질랜드	0.291	0.009	0.005	0.003	0	0	0	0	27
노르웨이	0.148	0.253	0.202	0.219	0.149	0.153	0.181	0	16
폴란드	–	0.034	0.070	0.064	0.056	0.056	0.047	–	22
포르투갈	0.5	0.218	0.257	0.004	0	0	0.003	0	26
슬로바키아	–	0.023	0.077	0	0	0	0	0	27
슬로베니아	–	0.029	0.026	0.102	0.073	0.07	0.058	0.050	21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스페인	0.425	0.509	0.63	0.694	0.643	0.658	0.72	0.761	7
스웨덴	0.19	0.162	0.219	0.001	0	0	0	0	27
스위스	1.325	1.031	0.956	0.606	0.516	0.535	0.569	0.574	10
터키	0.12	0.075	0.038	0.075	0.07	0.075	0.074	0.085	20
영국	0.653	0.577	0.624	0.517	0.54	0.572	0.599	0.665	9
미국	1.016	0.99	1.231	0.563	0.393	0.489	0.614	0.577	8
평균	0.487	0.387	0.395	0.333	0.323	0.343	0.358	–	

주: 순위는 2013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나. 우리나라의 상증세제 부담현황

(1) 세수추이

■ **다음의 그림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2002년까지는 비슷한 수치와 추이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 이후에는 증여세수가 상속세수를 앞지름
- 2014년 현재 상증세액은 총 4조 6,252억원 이며, 이 가운데 상속세액은 1조 6,961억원이고 증여세액은 2조9,291억원임

[그림 9] 상증세 세수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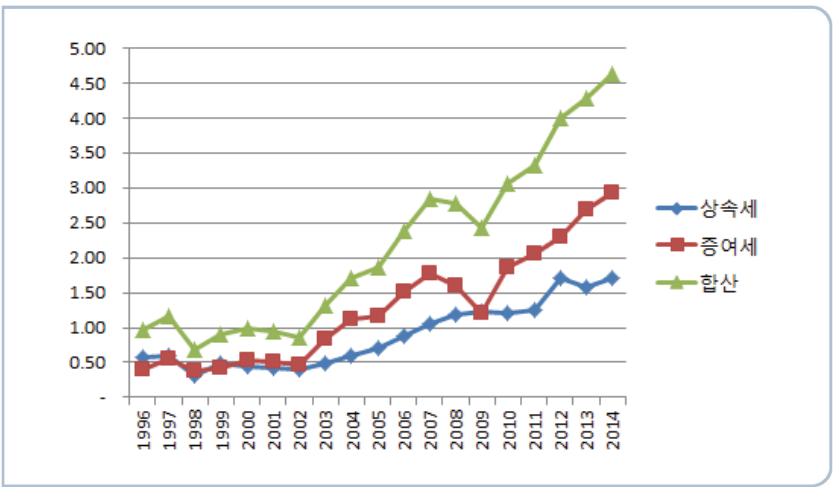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상속세의 부담현황

(가) 과세자 비율

■ **2014년 현재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약 31.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과세관청은 모든 사망자에 대해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2014년 현재 사망자 24,256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 수는 7,542명으로 그 비율은 31.09%임

[표 38] 상속세 과세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세인원(A)	4,547	5,720	6,201	6,275	7,542
사망자수(B)	23,207	22,602	23,234	23,260	24,256
비율(A/B)	19.59	25.31	0.03	0.03	31.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나) 평균 실효세율의 추이

■ 2000년 이후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76]은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2000년 34.3%에서 2004년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하락하여 2014년 현재 34.6%를 나타내고 있음

[표 39]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

(단위: 명, 백만원, %)

	결정 인원	상속 재산가액	과세 표준 (A)	산출 세액 (B)	1인당			평균유효 세율(B/A)
					상속 가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2000	1,389	3,413,441	1,865,282	639,102	2,457	1,343	460	34.3
2001	1,982	3,081,159	1,433,983	449,280	1,555	724	227	31.3
2002	1,661	2,993,597	1,767,097	583,178	1,802	1,064	351	33.0
2003	1,720	3,127,966	1,541,818	534,966	1,819	896	311	34.7
2004	1,808	4,791,927	2,875,659	1,171,007	2,650	1,591	648	40.7
2005	1,816	4,644,911	2,645,835	1,032,624	2,558	1,457	569	39.0
2006	2,221	4,736,341	2,510,410	931,919	2,133	1,130	420	37.1
2007	2,603	6,542,861	3,616,719	1,390,659	2,514	1,389	534	38.5
2008	3,997	8,635,999	4,413,307	1,584,400	2160	1,104	396	35.9
2009	4,340	10,108,267	5,336,628	1,971,412	2329	1,229	454	36.9
2010	4,547	9,019,117	4,397,852	1,526,624	1984	967	336	34.7
2011	5,720	10,658,798	5,327,998	1,902,263	1863	931	333	35.7
2012	6,201	11,229,621	5,679,688	2,051,345	1811	916	331	36.1
2013	6,275	10,639,004	5,135,364	1,757,290	1695	818	280	34.2
2014	7,542	13,407,488	6,512,691	2,251,527	1778	864	299	34.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 추이

■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율이 꾸준히 높았고,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근 약간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현재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을 살펴보면, 토지가 4조 2,429억원으

76) 평균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을 산출세액(산출세액/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치임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건물 2조 8,332억원, 금융자산 1조 8, 689억원, 유가증권 1조 3,305억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0]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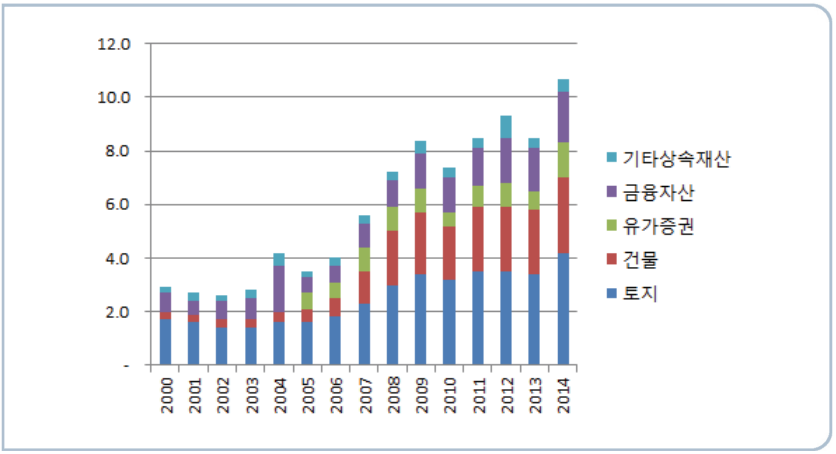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증여세의 부담현황

(가) 증여세 신고현황

■ **2014년 기준 증여세 신고인원은 88,972명이고, 증여재산가액은 12조 8,835억원이며, 신고세액(산출세액)은 3조 8,867억원 규모임**

- 2010년 ~ 2014년 동안 신고인원은 79,908명에서 88,972명으로 약 11.3% 증가했음
- 동 기간 동안 증여재산가액은 9조 8,017에서 12조 8,835억원으로 약 31.4% 증가하였으며, 신고세액은 2조 1,923억원에서 3조 8,867억원으로 약 77.2% 증가하였음

[표 40] 최근 5년도 증여세 신고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신고인원	증여재산가액	과세가액	신고세액
2010	79,908	98,017	91,082	21,923
2011	79,030	104,783	97,718	30,528
2012	77,789	104,493	97,536	27,263
2013	80,993	111,906	103,018	27,127
2014	88,972	128,835	119,011	38,86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2014년 기준으로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 신고인원은 직계존비속이 50,188명으로 전체 88,972명 가운데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21,696명으로 24.4%, 기타친족 15,693명 17.6%, 배우자 1,395명 1.6%임
- 총증여재산가액 역시 직계존비속이 13조 5,649억원으로 전체 18조 2,102억원 가운데 7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1조 7,597억원으로 9.7%, 기타친족 1조 7,0286억원으로 9.4%, 배우자 1조 1,826억원으로 6.5%을 나타내고 있음

[표 41]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기타	
	인원 (명)	총증여 재산 가액	인원 (명)	총증여 재산 가액	인원 (명)	총증여 재산 가액	인원 (명)	총증여 재산 가액	인원 (명)	총증여 재산 가액
2010년	79,908 (100.0)	122,451 (100.0)	1,524 (1.9)	11,182 (9.1)	41,891 (52.4)	82,885 (67.7)	13,569 (17.0)	14,063 (11.5)	22,924 (28.7)	14,321 (11.7)
2011년	79,030 (100.0)	144,711 (100.0)	1,216 (1.5)	9,233 (6.4)	42,874 (54.3)	91,605 (63.3)	13,245 (16.8)	14,343 (9.9)	21,695 (27.5)	29,531 (20.4)
2012년	77,789 (100.0)	134,074 (100.0)	1,218 (1.6)	9,323 (7.0)	42,080 (54.1)	94,346 (70.4)	13,593 (17.5)	14,647 (10.9)	20,898 (26.9)	15,758 (11.8)
2013년	80,993 (100.0)	142,664 (100.0)	1,342 (1.7)	10,918 (7.7)	46,722 (57.7)	99,487 (69.7)	14,648 (18.1)	15,506 (10.9)	18,281 (22.6)	16,754 (11.7)
2014년	88,972 (100.0)	182,102 (100.0)	1,395 (1.6)	11,826 (6.5)	50,188 (56.4)	135,649 (74.5)	15,693 (17.6)	17,028 (9.4)	21,696 (24.4)	17,597 (9.7)

주: 괄호( )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나) 증여세 평균 유효세율 추이

■ **2000년 이후 증여세 평균유효세율은 하락세를 보이다 2009년 이후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 증여세 평균 유효세율은 2000년 31.4%에서 2009년 24.6%로 하락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4년 현재 29.8%를 나타내고 있음

[표 42] **증여세 평균유효세율**

(단위: 명, 백만원, %)

	결정 인원	증여 재산 가액	과세 표준 (A)	산출 세액 (B)	1인당			평균유효 세율(B/A)
					증여 가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2000	37,165	5,747,667	4,939,427	1,549,591	155	133	42	31.4
2001	49,645	6,533,226	5,532,642	1,591,307	132	111	32	28.8
2002	55,049	5,725,625	4,435,486	1,072,792	104	81	19	24.2
2003	54,441	7,663,495	6,156,833	1,586,499	141	113	29	25.8
2004	103,024	13,336,640	10,171,371	2,275,017	129	99	22	22.4
2005	62,925	12,628,427	10,239,632	2,957,755	201	163	47	28.9
2006	88,279	15,370,061	12,282,063	3,021,348	174	139	34	24.6
2007	121,471	20,030,634	16,019,612	4,058,526	165	132	33	25.3
2008	97,277	22,222,037	19,168,574	5,458,791	228	197	56	28.5
2009	96,654	15,538,913	12,299,985	3,020,562	160	127	31	24.6
2010	96,623	21,498,641	17,873,240	4,943,980	223	185	51	27.7
2011	126,409	23,045,350	18,869,566	4,696,587	182	149	37	24.9
2012	91,331	19,101,095	15,953,733	4,142,555	209	175	45	26.0
2013	109,644	24,263,935	20,391,015	5,536,700	221	186	50	27.2
2014	105,533	29,423,168	25,205,941	7,500,436	279	239	71	29.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재산 종류별 증여재산

■ **재산 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토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토지 다음으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음**

- 2014년 현재 재산 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을 살펴보면, 토지가 4조 2,264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금융자산 3조 9,957억원,

유가증권 3조 387억원, 건물 2조 7,776억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1] 증여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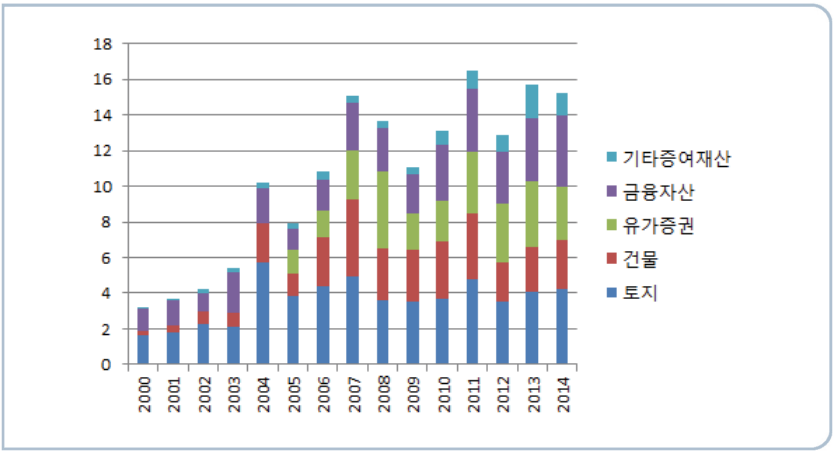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제 개편동향

■ **최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상속세제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부담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2001년 공화당 정부의 감세조정법에 의해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경감하여 2010년 폐지하려 하였으나, 2010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1년 개정전으로 복귀하여 현재 과세되고 있음
- 일본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공제액이 축소되었음

■ **스웨덴 등의 국가는 상속과세의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77]는 판단하에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를 도입**

77) 상속세제의 폐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명근, 『상속과세존폐론』, 경제법률사, 2007.)
1. 상속과세제도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
2. 재산상속권의 본질은 법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자연권임

가. 미국

■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78]」의 제정으로 2007년까지 유산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의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10년에 유산세(estate tax) 및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79]를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예정함**

- 동 법안은 유산세와 증여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유산세 및 증여세(gift tax)의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동 법안은 2010년 12월말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산세와 증여세는 2011년부터는 과거의 법률(2001년 법률)로 회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12월 17일 「조세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RUIRJCA)」[80] 입법을 통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2001년의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상의 유산세 등의 관련내용을 변경함**

-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이 2009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2010년에 잠정 폐지되었던 유산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부활하였음
- 유산세의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35%로 하며, 면세점은 5백만 달러로 하되, 2012년의 면세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함
  - 실제 면세점은 2012년에 512만 달러로 인상되었음
- 동 개정법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유산세 산정에 있어서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면세점 금액(unused exclusion amount of their deceased spouses)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세대생략세는 2011년부터 다시 시행되며 적용세율은 35%이며, 면세점은 유산세와 동일함
- 증여세는 2001년의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의 내용대로 2010년에는 최고

3. 특히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재원으로 모은 부에 대해 다시 상속과세를 하는 것은 2중과세라는 의견을 들 수 있음

78)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

79) 세대생략이전세란 자녀를 거치지 않고 2세대이상 건너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이전세제에 비해 가중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세제의 최고세율인 40%로 과세됨

80)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TRUIRJCA

세율 35% 및 면세점 1백만 달러를 유지하나, 2011년 이후에는 유산세와 동일한 세율구조, 면세점, 통합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

■ **오바마 행정부의 2013년 1월 2일 「미국납세자의 조세감면법」[81]의 입법을 통해 유산세 등의 일부가 개정됨**

- 기존에는 과세표준 50만달러 초과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기존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세표준 1백만달러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함
- 유산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40%)이 적용되는 구간 신설
  - 기존에는 과세표준 50만달러 초과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기존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세표준 1백만달러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함
- 2011년부터 적용되어 왔던 '물가수준 연동 면세점(exclusion) 5백만달러' 기준 및 배우자간 미사용 면세점 금액 승계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됨
  - 면세점은 2011년 500만달러, 2012년 512만달러, 2013년 525만달러임
  -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면세점 금액을 승계받아 자신의 상속 또는 증여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2017년 이후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수준을 2009년 수준으로 영구히 상향함
  - 동 내용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음
  - 최고세율은 유산세, 세대생략이전세, 증여세 모두 2009년 당시의 45% 수준으로 인상함
  - 면제한도(exclusion amount)도는 상속세와 세대생략증여세의 경우 350만달러, 증여세의 경우 1백만달러로 인하함
  - 면제한도에 물가수준과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음

나. 영국

■ **2007년 10월 상속세율 0% 적용구간을 신설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속세 감세 정책을 중단함**

81)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 2012년에는 상속재산 중 10%이상을 기부 시 적용세율 40%에서 36%로 낮춰 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이 개정됨

■ 2014년 9월 29일 영국 재무부는 연금 상속세 폐지 계획을 발표

- 현재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을 상속할 시 상속자에게 55%의 세금을 부과
- 2015년 4월부터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에 사망하여 연금을 상속할 경우 세금이 전액 면제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인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최저 소득세율만 부담하면 연금 수령가능
- 이번 정책의 도입으로 연간 1억 5천만파운드의 세수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

다. 독일

■ 1995년 6월 독일헌법재판소는 부동산자금과 금융자산의 평가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고, 당시 상속·증여세법의 효력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함

-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1996년 12월 세법개정으로 상증세의 평가규정이 변경됨

■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 2001년 개정
  - 생존자간의 거래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 2008년 개정
  - 기업의 계속적 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세 개혁법에서 가업(사업)자산의 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 가업상속공제율을 종전 35%에서 85% 또는 100%로 확대
- 2010년 경제성장촉진법
  - 사업용 자산가액의 85% 공제요건 충족요건 완화 : 가업승계 후 사업유지 의무기간을 7년에서 5년 단축
  - 사업용 자산가액의 100% 공제요건 충족요건 완화 : 가업승계 후 사업유지 의무기간을 10년에서 7년 단축

■ 2010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세율을 I등급[82]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등급의 상속 및 증여인의 세율을 10% 내외로 인상해서 상속·증여세를 강화함

- 이와 더불어 상속·증여세의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해서 세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상속·증여세의 증가를 방지하려고 함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가업상속공제제도 중 공제범위에 관한 요소들이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공제범위에 대한 요소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함
- 2016년 상반기 내에 불합치하는 요소 등을 개정하도록 주문함

라. 일본

■ 1980년대 지가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1988년, 1992년, 1994년, 2001년, 2003년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인하함

- 1987년 이전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75%까지 14단계 세율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최저 10%(1千萬円 이하)에서 최고 50%(3億円)까지 6단계로 상속세 세율구조를 조정함
- 증여세 세율도 상속세와 보조를 맞추어서 최저 10%(2百萬円 이하)에서 최고 50%(1千円)까지 6단계로 세율구조를 조정함

■ 2003년 "상속시정산과세제도(相續時精算課稅制度)", 2004년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경감특례" 등 다음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 및 가업상속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상속시정산과세제도"는 피상속인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상속세액에서 상속시정산과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상속세액이 되므로 상속세가 경감되는 이점이 있음

82) 독일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개인적 관계(친인척도)에 따라 3개의 과세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공제금액 및 세율을 차등 적용함
I등급: 배우자, 직계비속(손자 및 양자포함), 직계존속(상속만 포함), 등록된 동성파트너
II등급: 형제자매, 조카, 양부모,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속(증여만 포함)
III등급: I, II등급 외의 자간 상속 및 증여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경감특례"는 비상장주식을 상속 받은 상속인이 상속 후 3년 내에 비상장주식을 주식 발행회사에 다시 매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최고세율 50%)이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세율 20%)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

■ **2008년 중소기업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원활한 사업승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동 법률에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의 경감조치로서 과거에 10% 평가감액 하던 것을 80% 납부유예로 개정함

■ **2013년 3월 29일 상증세법이 대폭 개정 됨 (시행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상속부터임)**

- 상증세의 기초공제 및 세율구조 개정
  -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2015년부터 정액공제를 5,000만円에서 3,000만円으로 인하하고, 법정상속인 비례공제를 1,000만円에서 600만円으로 인하
- 상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10%부터 50%까지의 6단계 세율구조에서 최저세율 10%에서 최고세율 55%까지의 8단계로 세율강화

[표 43] **상증세의 세율 개정 내용**

과세표준	현행	개정
~ 1,000만엔 이하	10%	10%
1,000만엔 초과 ~ 3,000만엔 이하	15%	15%
3,000만엔 초과 ~ 5,000만엔 이하	20%	20%
5,000만엔 초과 ~ 1억엔 이하	30%	30%
1억엔 초과 ~ 2억엔 이하	40%	40%
2억엔 초과 ~ 3억엔 이하		45%
3억엔 초과 ~ 6억엔 이하	50%	50%
6억엔 초과 ~		55%

- 사업승계세제
  - 경영승계상속인 등의 요건 중, '비상장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친족일 것'으로 하는 요건을 폐지함
- 교육자금의 일괄증여 관련 증여세의 비과세조치

[표 44] 최근 OECD 주요국의 상속세제 동향[83]

국가	상속세 유무	세율	최근 주요 개정	
미국	○	18~40% (12단계 누진세율)	2001	감세법안가결(2002~2009년에 걸쳐 비과세 확대, 최고세율 체감, 2010년 유산세 폐지)
			2010	유산세 일시 정지
			2011	유산세의 부활
			2013	최고세율 인상,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가 남긴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의 항구화
영국	○	40%	2007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가 남긴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10	비과세 물가연동 동결
독일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7~30%(7단계 누진세율)	2008	공제액인상, 세율적용금액 인상, 세율 인상(2구간 및 3구간),
		형제, 양자녀, 양부모 등: 15~43%(7단계 누진세율)		
		기타: 30~50%(2단계 누진)	2010	세율인하(2구간)
프랑스	○	직계: 5~45%(7단계 누진세율) 형제 : 35~45% (2단계누진세율) 4촌이내 친족: 55% 기타: 60%	2006	생애증여의 누적기간 축소(10년→6년)
			2007	배우자 등에 대해 과세 면제, 공제 액인상(직계, 형제)
			2012	세율인상(직계), 생애증여 누적기간 연장(6년→10년), 공제액인하(직계)
			2013	공제액과 세율 등의 물가연동 폐지
			2014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말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증여 및 2016년말 이전에 신규주택을 자녀 및 증손자녀에게 증여한 거래에 대해 10만유로 특별공제 적용
덴마크	○	배우자: 0% 근친자: 15% 기타: 36%	1995	유산취득세방식에서 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절충형 방식으로 변경

83) 이 부분은 立岡健二郎, "相続税の課税方式に関する理論的考察-取得税方式への回帰に向けて-", 「J R Iレビュー」 Vol.4, No.5, 2013. p. 117 [(図表11)先進諸国における最近の相続税制の動向]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국가	상속세 유무	세율	최근 주요 개정	
핀란드	○	배우자, 직계, 배우자의 직계: 7~16% (4단계 누진세율) 기타 20~30% (3단계 누진세율)	2008	공제액인상
			2009	세율인하
			2012	최고세율구간 추가
이탈리아	○	배우자, 직계: 4% 형제, 기타 친족: 6% 기타 : 8%	2001	상속세폐지
			2006	상속세 재도입(유산취득세방식), 단일세율
			2007	형제를 배우자, 직계 범위로 구분하여 기타 친족 세율 적용
네덜란드	○	배우자, 자녀 : 10~20 (2단계 누진세율) 손자녀 : 18~36% (2단계 누진세율) 기타 : 30~40% (2단계 누진세율)	2010	공제액인상, 세율구분 축소, 최저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하
노르웨이	○	자녀: 6~10 (2단계 누진세율) 기타: 8 ~15% (2단계 누진세율)	2009	공제액인상, 세율인하
일본	○	10~55%(8단계 누진세율)	2003	최고세율 인하, 상속시정산과세제도 도입
			2008	가업승계납세유예제도 시행
			2013	최고세율 인상, 기초공제 인하
스페인	○	7.65~81.6%	특별한 개정사항 없음. 다만, 2014년 3월 세법개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 세목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오스트리아	×	-	2008	상속세 폐지
포르투갈	×	-	2004	상속세 폐지
스웨덴	×	-	2004	상속세 폐지
뉴질랜드	×	-	1999	상속세 폐지
호주	×	-	1979	상속세 폐지
			1985	사망시 양도소득과세의 도입
캐나다	×	-	1972	상속세 폐지, 사망시 양도소득과세의 도입

3. 우리나라의 상증세제 관련 주요 논의 사항

가. 상증세제의 유형전환

(1) 개요

- **상증세의 기능이나 역할은 부(富)의 편중 정도나 그 축적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84]**
  - 각국의 상속(유산)·증여과세제도는 그 명칭은 유사하지만 역사적 배경, 법률적인 배경, 다른 세목과의 관계 또는 세무행정의 수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음[85]
- **전통적으로 상증세제는 일부계층에 집중된 부를 계층간에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경제적 기회균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로 많은 조세전문가의 지지를 받아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가 축적되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반영되어 상증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임[8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증세제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경험적 결과들은 상증세제의 강화로는 부의 분산을 통한 경제적 기회균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87]**
  -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이를 존치할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음
- **일부국가에서는 상증세제를 폐지[88]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

8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p.1050.

85)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12, p. 139.

86) 조경엽,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p. 59. 참조.

87)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2, p. 29. 이하 부분도 참조.

88)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 스웨덴은 2005년에 폐지함

고 있으며, 이러한 상증세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89]

- 상증세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의식의 변화
  - 전통적으로 상증세제를 사상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사고방식은 공평(평등) 주의였으나, 오늘날은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음
- 가족관계 특히 혼인관계에 관한 이해의 변화
  - 가족 또는 혼인관계에 대한 민법 등이 개정되게 되고, 더 나아가 증여를 포함한 상속세제에도 영향을 미침
- 상증세제의 세수가 전체 세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수비용은 높음
  - 세무행정 비용·세수비교론의 관점에서 상속세제 개정(경감·폐지)압력이 강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승계를 저해하지 않는 세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상증세제의 재구성이 필요함

상증세제 존폐에 관한 논의

상속세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상속권은 시민법상의 권리(상속권 법정설)임. 재산상속권은 인간의 자연권이 아니고 국가가 창설 또는 시인함으로써 존재하게 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국가는 그가 수여한 재산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2. 상속세는 생존시 포탈 혹은 회피한 조세를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생존시 회피한 조세에 대한 과세에 대한 기회를 영구히 놓치게 됨
3. 상속세제는 응능부담의 원칙상 과세되어야 함. 유산 또는 증여재산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것이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임
4. 상속세는 사망세가 아님. 미미한 수의 사망자만이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충분조건이 될 수 없고, 생존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이 과세의 필요조건이 될 수도 없음
5. 상속세는 부유층만이 부담하는 조세로 부의 분산을 통한 공평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음
6. 부의 분산을 통한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조세
7. 상속세제는 소득과세에 대한 보완장치임
8. 상속과세폐지는 부유층에게 조세회피의 길을 제공하는 것임

89)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2, p. 29.

반면, 상속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상속권의 본질은 자연권임.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자연권이며, 사망시에 그가 소유하던 재산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권리도 개인의 자연권이므로 자연권을 침해하는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함
2. 상속세제는 사망세임. 상속세는 생존이 끝날 때 남긴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며, 생전에 열심히 일해서 절약하여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
3.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가치증가분이 아닌 재산총액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임
4. 상속세제는 다른 세목의 보완장치가 되지 못함. 상속세제가 소득세의 보완기능을 하려면 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 상속세제의 적정한 집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는 상속과세의 집행이 소득과세의 집행보다 더 어려워 보완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함
5. 상속세제는 자본축적, 임금, 고용과 경제성장을 총체적으로 감소시키는 비효율적 세제임
6. 납세순응비용이 과다함
7. 부의 분산이라는 전통적 기능 수행의 실패임.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주요국가에서의 경험적 결과는 상속세제가 부의 분산도 경제적 기회균등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
8. 저축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줌
9. 사업승계에 저해가 됨

자료: 최명근,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pp. 15~39.

(2) 현행 상증세제의 문제[90]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불일치**

- 상속 또는 증여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게는 경제적 부의 지출(부의 청산)이 되는 반면, 상속인과 수증자는 경제적 능력이 증가하는 수익이 됨
- 상속과 증여가 사람의 생애주기에서 벌어지는 부의 무상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의 청산에 초점을 두는 '유산세형방식'인 반면,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부의 증가에 초점을 두는 '취득과세형'은 채택하고 있음

■ **세제의 복잡성 등**

- 현행 상증세법은 포괄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

90) 이 부분은 김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방안 연구』, 2008.7, 김완일,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5-3호, 세경사, 2009. 12. , 채현석 · 박훈, "개인 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제24권제3호, 2007. 9. 한국세무학회, 정승영, 「상속 · 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KERI 정책제언 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 pp. 14~19. 등을 참조하였음

기 위해 여러 열거규정을 두는 등 그 체계가 복잡한 실정임

- 신고납세방식인 소득세제와 달리 과세관청이 신고 사실에 따라 세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정부부과방식(실질은 신고과세와 부과과세의 혼합형태)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가공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

- 현행 소득세법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고 있음(소세령 §163⑨)
- 만약 무상이전자의 실제 취득가액이 무상이전시점의 평가액보다 크다면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과 무상취득자의 보유기간동안의 총자본이득의 합계보다도 더 많은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가공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 **배우자 및 친족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문제**

- 우리나라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을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91]하면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에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승계한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기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본이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배우자 및 친족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3)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 검토

■ **현행 상속세제의 과세체계를 비롯한 본질적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 내지는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92]

-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면, 재산의 저량화(stock) 및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서 다음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이 원활해지도록 장기적

91)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상 취급방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이 있음
1.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법(우리나라에서 채택)
2.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이득을 실현하기까지 자본이득세의 과세를 연기하는 방법
3. 사망 또는 증여시에 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92)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12, p. 134.

으로 상속세제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임[93]**
  - 자본이득과세 원칙에 의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대로 승계하되 해당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때, 실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조세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임
- **그러나 장래에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한다면 전반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완비가 선행되어야만 피상속인이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제도가 현재 매우 미흡해서 상속과세폐지가 어려움[94]
-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완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제 등의 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95]**
  - 소득세 과세체계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체계의 보완필요

93) 정승영,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KERI 정책제언 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 p. 15.

94) 이러한 관점에서 상속체제의 체계를 단기적으로 각종 공제액을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인하와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하여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1. 각종 공제액의 현실화를 위해서 물가지수연동법 도입 검토 : 물가지수연동법인란 각 종 공제액 및 면세액 등에 대해서는 매번 소비자물가지수가 전 회에 조정한 지수에 비하여 일정 한도 이상 상승할 경우 다음 해부터 상승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
2. 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 : 2008년 정부는 상증세의 적정한 세부담 및 국부의 해외유출 완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음
3.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을 젊음 세대에게로의 생전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세부담을 없애거나 감소시켜서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하여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젊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5) 정승영,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KERI 정책제언 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 p. 16. 참조

-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범위 확대
-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자본이득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
- 자료의 법정 보존연수를 늘려 과세행정에 있어서는 물론 납세의무자 역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과세방식의 전환

(1) 의의

■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이 있음**

• 유산세형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과세베이스로 과세함으로써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 유산에 대한 누적된 조세관계를 정산한다는 의미를 가짐

• 유산취득세형은 상속인별로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응능부담의 관점에서 과세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로 징세행정이 간편하고 조세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산세형으로 과세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납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과세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음**[96]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속세법 제정 당시의 농업중심의 경제에서 현재 산업중심의 경제로 변화하였음

•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핵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

96) 이와 같은 상속세의 과세유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金完石, "相続税課税類型の転換に関する研究", 「立命館法学」 306号, 立命館大学, 2006. 최명근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김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방안 연구』, 2008.7, 김완일,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5-3호, 세경사, 2009. 12. , 안호영,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관한 연구 : 전환에 따른 입법적보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등의 논문을 참조하였음

었으며, 그 핵가족이 경제주체가 되면서 세분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향후 상속세 과세는 세수의 증대보다 상속세 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경제적 기회균등에 중점을 두고 상속재산의 분산을 유도할 필요성이 요구됨

(2) 현행 상속세제 과세방식 변경의 논리

■ **유산취득세방식이 유산세방식보다 공평과세에 더 부합**

-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며, 상속세가 취득한 상속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과된다면 세부담의 형평성은 훼손되는 것임
- 결국 유산세형은 유산액에 따라 조세가 결정되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서 공평한 과세가 어렵게 됨

■ **유산세방식은 부의 분산기능이 미흡**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한 일괄 과세함으로서 부의 분산효과가 약함

■ **최근의 상속 특성을 고려한 개인단위 과세의 필요**

-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들을 과세단위로 구분하여 고찰해보면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상속재산 취득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며, 소비 역시 개인단위로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타당

■ **유산세방식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

- 각종 상속 공제효과가 유산취득자 개개인에게는 직접 미치지 못하므로,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의 상속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 **무상이전에 과세체계의 일관성 결여**

- 상속세는 유산세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에서는 유산취득세형과 같은 과세방법을 취하고 있어 상속세제의 일관된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

(3)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시의 과제[97]

■ **조세회피 목적의 상속재산 위장 분할 추정과세 규정마련**

-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과세관청의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한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추정과세규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과세처분의 적법성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지만 상속재산의 위장분활은 상속인 내부간의 상속재산 분할로 비상속인들은 내면의 관계를 잘 알 수 없음
  - 따라서 과세관청의 과세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위장분할에 관한 추정이나 의제규정을 둘 수 있음
- 다만, 추정과세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야할 것임

■ **상속재산 귀속불분명시 법정지분에 따른 과세제도 도입**

- 상속재산을 미분할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대금이나 인출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본과 같은 법정상속세과세방식(법정지분과세방식) 도입 검토
- 법정상속세과세방식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이후 실제 귀속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귀속자 등이 실질귀속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배우자간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의 완화**

-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이전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유산세방식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확대되면 다른 상속인에게까지 그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상속재산공제라는 한도 적용을 받으므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이혼재산분할 등의 경우와 달리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인 배우자의 몫에 제한을 받게 됨

97) 상속세제의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안호영,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관한 연구 : 전환에 따른 입법적보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을 주로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 폐지**

- 유산세방식과 달리 유산취득세방식은 납세의무의 확정절차가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납세의무자가 본인과 무관한 다른 납세의무자의 불성실 납세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상속재산 위장분할은 관련 당사자들이 은밀하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장분할과 관련된 연대납세의무는 유지할 필요가 있음

다. 가업승계세제의 완화 여부

(1) 의의

■ **가업승계란 현재 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가업의 계속적 존속을 위하여 후계자에게 가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됨
-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유권 또는 경영권 이전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

■ **가업승계를 통해 가업용 자산이 상속 및 증여로 후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업승계세제를 도입함**

- 기업은 창업 이후 수십여년에 걸쳐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핵심역량(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며, 축적된 노하우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확보됨[98)]
- 가업승계세제는 기업의 계속적 유지 및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가업상속공제 등을 통해 상속세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세제임
  - 일반적으로 가업승계세제는 상속재산공제, 저율과세 후 사후정산 등의 과세특례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98) 안숙찬,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12호, 대한경영학회, 2013. 12. p. 3190.

■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의 계속적 유지 및 성장을 통하여 고용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상속세제 본연의 관점에서 사업용 자산과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상 문제와 가업상속자에 대한 부의 집중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2) 가업승계세제의 주요 개정경과 등

■ 1987년 舊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과세상 혜택을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60년~1970년대 산업 고도화 단계에서 창업하여 활발한 기업 활동을 벌여 왔던 창업 1세대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중소기업 창업자 및 관련 단체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원활한 가업상속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에 상속세 부담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87년 舊조세감면규제법에 가업승계세제가 도입되었음
- 1996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가업상속공제를 신설하여 그 영속성을 갖추었으며, 2007년말 세법개정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한 이후 매년 확대 개정되어 오고 있음
  - 현재 가업상속대상기업은 종전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가업상속재산 100%(공제한도 200억원~500억원)로 확대되었음

[표 45] 2007년 이후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개정 현황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한도액
'07. 12. 31. 이전	•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가업상속재산가액	• 1억원
'08. 1. 1. 이후	•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 (미달시 그 가액)	• 30억원
'09. 1. 1. 이후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 (미달시 그 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 60억원 15년 이상 : 80억원 20년 이상 : 100억원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한도액
'11. 1. 1. 이후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	• 상동	• 상동
'12. 1. 1. 이후	• 상동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 (미달시 그 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 100억원 15년 이상 : 15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13. 1. 1. 이후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및 매출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상동	• 상동
'14. 1. 1. 이후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및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가업상속재산가액(100%)	•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자료: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4.

■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건수는 총 296건(연평균 59.2건)이며, 공제금액은 약 2,973억원(연평균 594.6억원)임**

[표 46]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건수	가업상속공제금액
2010년	54	386
2011년	46	325
2012년	58	343
2013년	70	933
2014년	68	986
합계 (평균)	296 (59.2)	2,973 (594.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각 연도.

(3) 가업승계세제 확대(완화)의 재검토

■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중소기업)의 계속적 유지 및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도입**

- 가업승계세제는 상속세 본연의 관점에서 가업용 자산과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가업상속자에 대한 부의 집중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

- 그러나 가업상속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사업(자산) 매각 등으로 가업지속성이 단절되어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세제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의 확대로 인해 도입 취지가 약화되고 조세회피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지나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2014년 행정부의 상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시 가업상속공제의 지나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2014.12.2.)

(가) 적용대상 기업의 확대에 따른 도입취지 약화

■ **가업상속공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업승계는 가족구성원이 기업활동에 관여(참여)하는 가족기업의 승계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기업지분의 과반을 소유하면서 그 구성원이 경영과 관리활동에 참여하는 가족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승계는 가업승계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가업상속공제 도입시 그 대상 가업(기업)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였음**

■ **그러나 2011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가 중소기업 이외에 중견기업(매출액 기준: 2015년 현재 3천억원 미만)까지 확대되었음**

- NICE신용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정보에 의하면 전체 상장기업(금융업 제외: 922개) 가운데 2013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47개 기업)한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은 396개 기업(코스닥 916개 기업)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이 가업승계대상기업이 상장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동 세제의 도입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가업승계는 기업의 주된 구성요소인 경영과 소유자산의 승계를 의미하지만, 상장기업들은 자본과 경영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가업승계 개념에 부합하지 못함
- 중소기업이 현금 유동성이 낮아 상속세 부담을 위해 가업(사업)용 자산을 매

각하거나 폐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하였지만, 상장기업 주식은 환금성이 용이하므로 가업승계대상 기업에는 부합하지 못함

- 중소기업의 가업용 자산 대부분이 사업자산(비상장주식)을 형성하여 현금유동성이 낮음

(나) 대상요건 완화에 따른 조세회피 유인의 문제

■ **가업상속공제로 인한 조세회피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가업승계세제의 대상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등은 강화되어 있으나, 최근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개정안도 발의됨[99)]**

- 피상속인의 요건을 10년 이상 경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2년 이상)을 폐지
- 사후관리요건에서는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종전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을 금지하던 것을 법인은 그 요건을 폐지하고 개인은 50% 미만의 처분을 허용

■ **대상요건의 완화는 세부담 경감의 이익을 가업승계자 개인이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회피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입법취지와는 별개로 조세혜택규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적극적 조세회피 계획과 행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 Desai and Dharmapala(2006)는 가족기업이 높은 지분을 보유하면서 가족이 직접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사적이익 추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회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100)]

99) 2014년 9월 22일 행정부 세법개정안 및 2014년 12월 30일 강석훈의원 발의안.

100) Desai and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e, Vol.79, pp.145~179. 재인용; 심상규·김지범, "경영권 교체기업의 조세회피성향 : 가족상속기업과 인수기업의 차이 비교",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p.3.

[참조]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가업승계세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명칭	• 가업상속공제	• 가족소유 사업지분에 대한 공제	• 사업자산공제제도	• 사업승계자산 상속세 과세특례	•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	•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유예(사업승계)
세제혜택 방식 및 내용	• 공제방식 •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 100% - 공제한도: 200억원 ~ 500억원	• 공제방식 • 공제금액 Min [가족사업지분, 67.5만달러] 단, 기본공제와 합해서 1.3백만달러 한도	• 공제제도 • 공제금액 비상장주식 100% 상장회사 50%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 50%	• 비과세 • 비과세 비율 사업용 자산 및 주식 75%	• 공제방식 • 공제비율 요건에 따라 100%, 85%	• 과세이연 • 이연기간 5년
대상기업	•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미만의 중견기업	• 가족소유기업	• 적격사업 요건을 만족한 기업	공업, 상업, 수공업, 자유업 또는 농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업제한 없음	• 중소기업 • 다만, 유흥업(풍속업)이나 총수입금액이 0인 기업 등 제외
피상속인 요건	• 지분요건 - 비상장기업 50%, - 상장기업 30% 상속개시일	• 지분요건 50% 이상(가족구성원 포함)	• 보유요건 - 2년간 중요사업자산을 보유	• 지분요건: 상장기업 의결권 주식 20% 이상 비상장기업의 의결권 주식 34% 이상 • 보유요건 - 2년간 그 기업을 보유	없음	• 지분요건 - 상속직전 50% 초과 - 상속직전 상속인(후계자) 제외하고 의결권 최대보유
	• 경영참여요건 10년 (이 가운데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 경영참여요건 8년 (이 가운데 5년 이상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	없음	없음	없음	• 경영참여요건 대표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인이 해당 가업을 모두 상속 • 재직기간 상속 2년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가족구성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현 임직원	없음	없음	없음
사후관리	• 가업유지요건 : 상속 후 10년간 가업 영위 • 보유요건 :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 고용요건 : 10년간 매년말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100%(중견기업120%)	• 지분보유요건 : 상속 후 10년 이내 가족사업지분 처분 제한 • 상속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사업활동에 대한 참여요건을 이후 8년 중 최소 5년 유지 • 상속인은 10년 시민권, 사업장소 미국내 유지	없음	• 보유요건 : 가업자산 4년간 유지 주식공동보유계약만료 후 4년간 주식 보유 • 경영요건 : 상속인 또는 주주공동보유관계에 서명한 공동경영자 1인이 3년간 회사를 경영	• 사업유지요건 : 5년(7년)동안 사업용 자산과 함께 유지 • 고용유지요건 : 5년(7년)간 승계연도 총 급여액 400%(700%) 유지 • 사업자산비율 : 수동자산이 50%(10%) 초과하면 안됨	• 사업유지요건 : 5년간 사업유지(매년 사업지속보고) • 경영요건 : 대표자 유지 • 지분요건: 의결권 주식 50% 이상 유지 • 고용요건 : 상시종업원 80% 유지

부록: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부록: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1. 개요

- **상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므로 그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재산의 평가가 과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큼**
  - 재산의 평가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객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의 관점에서 재산평가는 세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통일되지 않은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다면 조세공평을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상증세법에 의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상증세법 §60)**
  -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그러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에 평가기간내의 매매가액 등 일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 특정재산의 시가는 항상 일정불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변성을 가지게 됨
  - 평가기간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임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각 재산별로 다음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상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상증세법 §60③)

- 보충적 평가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과세당국은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게 함
  -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용어는 상증세법의 법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는 의미로 대법원 판결문에서 사용되고 있음

2. 시가평가

가. 의의

■ **상증세법상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가로 봄(상증세령 §49)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01]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상증세령 §49①)

■ **평가기간**

-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경우에 매매가액 등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101) 여기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을 말함

[표 1] 평가기간의 판단기준일

구 분	평가기간의 판단기준일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경매·공매·수용의 경우	경매가액·공매가액·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나. 시가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 시가가 2 이상인 경우

-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사례가격을 적용하지 않음

■ 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여 구분

[표 2] 2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구 분	안분계산기준
토지·건물 각각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일 등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토지·건물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토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안분계산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

다. 시가로 보는 범위

■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원칙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평가기간 내의 일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 평가기간 내의 일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이유는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상장·코스닥상장 주식을 제외하고는 상증세령 제49조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음

[표 3] **시가로 보는 범위**

구 분	내 용
매매가격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감정가격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다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제외)
수용·공매·경매가격	평가기간 내에 가격결정이 된 경우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유사사례가격	평가기간 내의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2이상 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3. 보충적 평가방법

가. 의의

■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재산평가방법은 상증세법 §61 내지 동법 §65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함**

-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표 4]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재산의 종류 및 관련법 조문

재산평가의 구분	근거법령의 조문
부동산 등의 평가	상증세법 §61, 상증세령 §50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상증세법 §62, 상증세령 §52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증세법 §63, 상증세령 §54·§56의2·§57· §58·§58의2·§63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상증세법 §64, 상증세령 §59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상증세법 §65, 상증세령 §60·§61·§6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상증세법 §66, 상증세령 §63

■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다만,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임[102)]
  -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임

나.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상증세법 제61조의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대상 재산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 밖의 유형재산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해당 재산의 소재지·경제적 활용방법 등을 고려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
- 부동산 관련 권리 등과 관련해서는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토지 및 건물 등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등의 보충적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에 따른 산정방식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함

10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대법원 1990. 1. 31. 선고 88누2861 등

$$-\ \text{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text{임대보증금} + \frac{\text{1년간의 임대료}}{\text{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율은 12%(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표 5]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평가대상재산			보충적 평가방법
부동산	토지		- 원칙 : 개별공시지가 - 지정지역 안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배율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 지정지역 안)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주택	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관련 권리	지상권		지상권평가액 $= \frac{\text{각 연도의 수입금액(토지가액} \times 2\%)}{\left[1+\frac{10}{100}\right]^{n}}$ * n : 지상권의 잔존연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1)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상증세령 §51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은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함
유형자산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재취득가액에서 해당 시설물 등의 설치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		- 처분할 경우 재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 위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용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		- 처분할 경우 재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 위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가운데 큰 금액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기타 유형재산		처분할 경우 재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주: 1. 소세령 §165⑧iii에 따른 가액

다. 유가증권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

■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권리와 증권을 결합시켜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유가증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 등의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과 그 이외에 자금 모집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국·공채, 사채)으로 대별됨

(1) 주식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 **주식 등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로 대별됨**

-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표 6] **주식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상장주식 (코스닥 포함)	일반적인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증자·합병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합병 등의 사유발생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합병 등의 사유발생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발생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
	상장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		MAX [①, ②] 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그 가액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비상장주식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 \frac{1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 + 1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5}$ * 1주당 순손익가치 $\frac{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10\%)}$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 1주당 순자산가치 $\frac{\text{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위에서 평가한 가액에 다음과 같이 할증평가함

최대주주 등 지분율	중소기업	대기업
50% 이하	10% 할증	20% 할증
50% 초과	15% 할증	30% 할증

(2)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으로는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행된 국·공채·사채·수익증권 등이 있음**

- 국채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국가의 채무를 말하며, 공채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 정부관계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를 말함
- 사채란 주식회사가 채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반공중으로부터 기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수익증권인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103]에 대한 출자지분[104]이 표시된 것을 말함

[표 7]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국·공채 및 사채	거래소 거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가운데 큰 가액
	거래소 이외의 거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 :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기타의 것 : 처분예상금액
전환사채	거래소 거래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
	거래소 이외의 거래	①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 만기상환금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

103)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함

104)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

구분	평가방법
	을 가산한 가액 ②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 위 ①의 가액과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대부금,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	①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적정할인률*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② 위 ①외의 채권의 경우 : 원본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 *적정할인률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라. 기타 재산의 보충적 평가

■ **위의 재산 이외에 상증세법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서는 무체재산권, 조건부권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음**

- 무체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함
  - 무체재산권의 예를 들어보면 영업권, 어업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광업권, 채석권 등이 있음
- 조건부권리(條件附權利)란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가진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권을 말함
  - 조건부권리의 예를 들어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정기금을 받을 권리,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담보제공된 재산은 대부분 금융차입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채무는 전액 인정하게 되면, 결국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당해 채무액이 다른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105]

[표 8]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무체재산권	MAX[①, ②] ① 재산의 취득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평가액
조권부권리	평가기준일 현재 조건내용·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MAX[①, ②] ①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05) 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참고문헌

구욱서, 「사법과 세법」, 유로, 2010.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5.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4년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4.

김완일,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5-3호, 세경사, 2009. 12.

김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방안 연구』, 2008.7

김진,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신재열외 2인, 「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5.

심상규·김지범, "경영권 교체기업의 조세회피성향 : 가족상속기업과 인수기업의 차이 비교",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안숙찬,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12호, 대한경영학회, 2013. 12.

안호영,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관한 연구 : 전환에 따른 입법적보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광재,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조경엽,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정승영,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KERI 정책제언 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2,

최명근, 「상속과세론」, 세경사, 1990.

최명근,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최명근, 「상속과세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12

Abel, A., “Precautionary Saving and Accidental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5, 777−91, 1985.

Andreoni, J., “Giving with Impure Altruism : Applications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97, 1447−58, 1989.

Bernheim, D., A, Schleifer, and L.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99,899−927,1985.

Desai and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e, Vol.79,

Kaplow, L.,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and Gift Taxation,” in W. Gale, J. Hines and J. Slemrod eds., Rethinking Estate and Gift Taxation, 164−215, Brookings, 2001.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国枝繁樹, “相続税・贈与税の理論”,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2002. 10.,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関口智, “相続税・贈与税の理論的基礎：シャウプ勧告・ミード報告・マーリーズレビュー”, 「税研」 151号, 2010. 5.

金完石, “相続税課税類型の転換に関する研究”, 「立命館法学」 306号, 立命館大学, 2006. p. 205.

中川善之助・泉久雄, 「相続法 (第4 版」, 有斐閣, 2000,

水野忠恒, “相続税の意義と根拠”, 「相続税・贈与税の諸問題」, 日税研論集 第61号,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2011.

立岡健二郎, “相続税の課税方式に関する理論的考察― 取得税方式への回帰に向けて―”, 「ＪＲＩレビュー」 Vol.4, No.5, 2013.

2016 조세의 이해 및 쟁점

⑤ 상속세 및 증여세

발간일 2016년 6월 3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tel 02 · 2269 · 9917)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8)

ISBN 978-89-6073-900-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대한민국 국회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❺ 상속세 및 증여세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9-001447-10